

第256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10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11月24日(木)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3.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4.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발의)
5.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勤勞基準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선 의원 대표발의)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8.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
9.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
10.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1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1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1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技能獎勵法 일부개정법률안
15.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6.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
17.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
1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9.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3. 韓國産業人力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
24. 技能大學法 일부개정법률안
25.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國家技術資格法 일부개정법률안
27.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28.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1.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먹는물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環境紛爭調停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審査된案件

- 1.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김한길 · 김재윤 · 김형주 · 원혜영 · 이시종 · 김덕규 · 김원웅 · 문병호 · 이은영 · 우원식 · 장복심 · 조정식 · 제종길 · 김영주 · 김태년 · 서갑원 의원 발의) 4
- 2.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 · 강기정 · 김춘진 · 단병호 · 신학용 · 안민석 · 이원영 · 이경숙 · 이은영 · 이인영 · 이종걸 · 임종인 · 정봉주 · 정성호 · 장복심 · 장향숙 의원 발의) 4
- 3.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강창일 · 김재윤 · 조일현 · 신중식 · 한광원 · 이시종 · 장경수 · 박찬숙 · 이강래 의원 발의) 4
- 4.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발의)(전여옥 의원 외 14인 발의) 4
- 5.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 6. 勤勞基準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선 의원 대표발의)(배기선 · 원혜영 · 신기남 · 최재성 · 엄호성 · 정봉주 · 김태년 · 정성호 · 유기홍 · 한병도 · 주승용 · 김태홍 · 지병문 · 임종석 · 장향숙 · 맹형규 · 최성 · 이규택 · 박기춘 · 정청래 · 김희선 · 김선미 · 유정복 · 서갑원 · 구노희 · 이은영 · 유승희 · 이영호 · 백원우 · 이해봉 · 한명숙 · 심재철 · 황우여 · 신국환 · 노현송 · 이상경 · 이근식 의원 발의)11
-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11
- 8. 最低賃金法 一部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11
- 9.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염동연 · 김낙순 · 김종률 · 노현송 · 박상돈 · 박재완 · 박찬숙 · 신상진 · 심재철 · 서갑원 · 서재관 · 선병렬 · 안상수 · 이근식 · 이상경 · 이시종 · 이영호 · 이원영 · 이해봉 · 우제창 · 엄호성 · 정성호 · 조일현 · 최인기 · 한광원 · 황우여 의원 발의) 11
- 10.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 · 안민석 · 박찬숙 · 황우여 · 이재오 · 이성권 · 엄호성 · 김희선 · 강혜숙 · 서갑원 · 서혜석 · 심재철 · 장향숙 · 김현미 · 박상돈 · 심재덕 · 서재관 · 한광원 · 한명숙 · 유승희 · 장영달 · 홍미영 · 조배숙 · 최순영 · 이미경 · 이은영 · 최규성 · 민병두 · 유시민 의원 발의) 11
- 15.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대표발의)(채수찬 · 김명주 · 김양수 · 김종률 · 김재원 · 김혁규 · 노영민 · 박기춘 · 박승환 · 심재엽 · 우제창 · 이계안 · 이목희 · 이시종 · 이인기 · 최규성 · 최인기 의원 발의) 20
- 1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 · 이계경 · 정두언 · 김태환 · 이성권 · 엄호성 · 이해봉 · 전재희 · 이은영 · 이재오 · 박계동 · 박찬숙 · 김석준 · 서병수 · 고조홍 · 정희수 · 안상수 · 김충환 · 배일도 · 이원영 · 정화원 · 김태년 · 김문수 · 김영숙 · 이해훈 · 홍미영 · 최순영 · 박재완 · 김희정 · 이경숙 · 박종근 · 황우여 의원 발의) 23
- 1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 · 이명규 · 손봉숙 · 김애실 · 나경원 · 신상진 · 이주호 · 박세환 · 김재원 · 엄호성 · 공성진 · 김태년 · 황우여 · 고조홍 의원 발의) · 23
- 1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 14. 技能獎勵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 16.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26

17.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26
1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26
19.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27
20.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21.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강길부·박영선·정봉주·제종길·단병호·장향숙·장복심·임종석·신상진·김형주·이상경 의원 발의) 29
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23. 韓國産業人力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24. 技能大學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25.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길·김부겸·조경태·안상수·노현송·엄호성·강혜숙·우원식·김영덕·배일도·홍미영·신상진·이목희·임종인·김태홍 의원 발의) 44
26. 國家技術資格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신학용·김동철·김우남·오영식·김재윤·한광원·이영호·윤원호·김현미·백원우·제종길 의원 발의) 44
27.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유정복·이인제·엄호성·안상수·박재완·이혜훈·이인기·공성진·신상진·박순자·이계진·정화원·고경화·윤건영·이주호·이재웅 의원 발의) 44
28.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강창일·김태홍·김형주·우상호·우원식·유선호·이기우·이호웅·장복심·정성호·조정식·최규식 의원 발의) 45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영주·김형주·노영민·단병호·우윤근·이목희·장복심·정청래·제종길·조정식 의원 발의) 57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31.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3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3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심재엽·최연희·홍문표·김학송·김재원·허천·박재완·김재경·김재원·임인배·류근찬·서병수·김명주·엄호성·정병국·고조흥·김춘진·정문헌·이해봉·박세환·박상돈·최경환·이인기·이계진·허태열·이명규·전여옥·박찬숙 의원 발의) 64
34.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김재원·박재완·권경석·곽성문·안상수·김성조·정갑윤·이상득·김무성·임인배·배일도·이해봉·고조흥·엄호성·이인기 의원 발의) 64
3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신학용·김동철·김우남·오영식·김재윤·한광원·이영호·윤원호·백원우·김현미·제종길 의원 발의) 64
36. 環境紛爭調停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신학용·문병호·제종길·김재윤·한광원·이영호·김우남·오영식·윤원호·김동철 의원 발의) 64
3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김재경·이계경·임태희·이해봉·박세환·신상진·김재원·엄호성·안상수·정성호·최규식·박재완·고조흥·안민석·이은영·나경원·이경재·박승환 의원 발의) 64

(10시38분 개의) 다.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

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법률안 27건과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 10건 등 37건의 법률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벌인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김한길·김재운·김형주·원혜영·이시중·김덕규·김원웅·문병호·이은영·우원식·장복심·조정식·제종길·김영주·김태년·서갑원 의원 발의)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강기정·김춘진·단병호·신학용·안민석·이원영·이경숙·이은영·이인영·이종걸·임종인·정봉주·정성호·장복심·장향숙 의원 발의)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강창일·김재운·조일현·신중식·한광원·이시중·장경수·박찬숙·이강래 의원 발의)
4.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발의)(전여옥 의원 외 14인 발의)
5.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경재 의사일정 제1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전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목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의원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목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용어의 정의에 있어 근로자의 기준이 엄격하여 실직 상태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고용불안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 상태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실직 상태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충을 위하여 실업자에게 초 기업단위 노조의 가입자격을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구직 중인 노동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는 등 법적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8년 노사정합의의 취지를 이행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여 실직 상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정의를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진 자로 하였습니다.

둘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해고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재직하는 근로자로 해석하였습니다.

셋째,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노조의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로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한정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라며 아무쪼록 실직 상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노동부 소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노동부는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에 대응하여 고용서비스 선진화,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조항의 근로자 개념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확충하고, 둘째 국가의 시책 및 노사의 책무에 고용평등 증진노력 의무를 부가하는 한편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시키는 등 고용차별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촉진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고용촉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고용촉진시책을 강화하였고, 넷째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인 중앙고용정보원을 독립시켜 고용정보 관리 전문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효과적인 고용지원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고, 다섯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

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2조(정의)제1호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정의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1호의 “수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는 전직 실업자 외에 신규 실업자, 근로 의사가 있는 자영업자, 종속 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 학생 등도 근로자에 포함되어 이들의 노조 가입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논의와 검토가 있을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40조 및 제89조제1호는 노동관계 지원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의 삭제입니다.

동 규정은 노사 자치를 저해하지 않는 미신고자의 단순한 지원·조력까지 제한·차별하여 외부의 지원·협조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함으로써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최근 초기업단위 노조의 증가로 신고가 필요한 제삼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상의 실효성 문제와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현행 노동관계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노조활동을 좀더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운송사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 철도나 버스와 같은 필수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장기 파업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재 위원장, 배일도 간사와 사회교대)

직권중재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허용 및 최소업무 유지제도의 도입 등 보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입법례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필수공익사업을 존치하면서 항공운수사업을 추가로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이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18조의3(출소자의 고용촉진의 지원) 출소한 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 개발기회 등을 통한 취업기회의 확대 조치 규정의 신설입니다.

현재 재소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법무부 소속 개별 교도소의 교학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취업 및 자영업이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직업전문학교 또는 일반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출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이들에 대한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도 구직을 원하는 출소자는 구직자에 해당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구직자와 동등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당연히 받을 수 있으므로 이의 입법화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1조의2(정의) “근로자”의 정의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상시화된 고용 서비스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4조(국가의 시책) 지역 고용촉진의 지원 강화입니다.

참여와 분권이 중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노사단체 등에 의한 지역별 고용촉진 및 고용창출도 중요하므로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특화된 고용창출 및 고용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배일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인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심사할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오후에 어제 처리 못 한 환경노동위 법안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좀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분!

예, 신상진 위원님.

○신상진 위원 정부가 제출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장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취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취지 중의 하나입니다.

○신상진 위원 현재 고용정책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사실 미취업 근로자나 실직자들이 대단히 많은 상태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러면 사실은 현재 고용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책 자체만 잘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대상을 확대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되는 취지도 있지만 현재 고용정책 대상 자체도 고용정책을 제대로 펴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위만 늘린다고 해결됩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게 범위만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입니다.

항상 새로운 신규 인력이 유입되고 취업자가 실직자가 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 대상에서 늘리는 것이 기존의 정책 대상으로 있던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학생이라든가 취업 의사를 가진 이들이 노조 설립의 주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부분은 고용정책하고 조금 다른 분야인데요.

○**신상진 위원**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좀 넓힌다는……

○**노동부장관 김대환** 정부의 로드맵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안은 이 가운데에서 학생과 같이 아직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은 제외하고 직업을 가졌다가 실직한 분들, 실직자에 대해서만 노조를 허용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일도** 존경하는 이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위원**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31조의2(벌칙)을 보면 “제10조의3제9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의3제9항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정보의 경우는 개인의 신상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은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 규정을 보면 개인정보를 누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구직자 또는 구인 업체 현황과 관련된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이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에, 물론 저장된 정보의 내용과 질 이런 것을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벌칙 규정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벌칙에 대한 양형 기준이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아

직까지 확고하게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벌칙 조항을 지금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의 유사 사례를 참조해서 2년 이하, 200만 원 이하로 했는데 고용정보의 중요성이나 비밀 누설 내용의 중대성이 크다고 한다면 양형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목희 위원** 이게 원래 노동부 안입니까, 아니면 법제처하고 의견 조율 이후에 나온 안인가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법제처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데 노동부의 원래 안대로 협의가 된 것인가요? 이게 노동부의 원래 안이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노동부 원래 안이었는데 다른 데서 별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잘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해 보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으로 보아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 규정도 있고 이게 좀 상향 조정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바로 직결된 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에는 상향 조정을 하는 데 정부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형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일도** 이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복심 위원님!

○**장복심 위원** 의사일정 제3항 김우남 의원님 안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신중하게 조정하는 등 공익 보호와 쟁의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항공사업을 필수공익

사업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의사일정 제4항 전여옥 의원 안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용정책을 추진하여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제15조를 통해서 구직자에 대해서 고용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소자의 경우도 구직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수형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2건에 대한 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노사관계 로드맵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후자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출소자에 대한 서비스를 할 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공공적인 장소나 제도에서 그분들이 드러나게 하면 오히려 그러한 서비스를 받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일반적인 제도를 가지고 그분들께 서비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일도** 장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장복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김우남 의원 안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선진화 관련 노사관계 로드맵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국제 기준에 좀 따르고 노사관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우남 의원님께서 특히 지난번 아시아나항공 파업을 이유로 이 법안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확대는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에도 역행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와 직권중재제도에 대해서는 노동부도 가급적 축소시키고 ILO나 국제관례에 따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공익사업장인 경우 지난번에 노동부가 아시아

나에서 보여 주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공익사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안 하더라도 현재 항공산업이 공익사업의 범주에 있다면 충분히 우리 국민경제라든가 국민들의 불편한 사항 등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장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김영주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노사관계 로드맵에 들어 있는 안이고 거기서 몇 가지는 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 노동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공감하고 다 동의합니다.

약간 보완할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일자리 개념이 좀 불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대리운전이나 택배 사업 같은 시장형 일자리나, 교육부에서의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학생들 자원봉사와 같은 것도 현재 사회적 일자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본래 개념에 적합한지는 꾸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용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할 때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개념 기준 정리를 좀 정의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주 적절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의 지원 근거를 이번 법에 마련하는 것을 계기로 말씀하신 개념 정리,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일도**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 정부의 고용정책기본법과 관련하여 이번에 낸 개정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 과제들 중심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업을 할 때나 어떤 정책을 실현할 때 반영하는데, 여기는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업을 특화시켜서 명시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고용정책기본법에 아주 구체적인 특화된 사업을 굳이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일단은 사회적 일자리가 지금 현재 다른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자꾸 개발되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에 법적인 지원근거만 마련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서 사후에 별도의 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 근거를 어느 법에선가 마련해야 되는데, 현행법에 보면 고용정책기본법 외에는 이 근거를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본법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면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우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셨고 장관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세 가지 점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문제는 아직도 위원회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 헌법재판소 판결은 났지만 실제 위헌이라는

사람이 다수였고, 합헌이라는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5대 4로 위헌결정은 안 되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위헌이 다수였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5 대 4는 상대적으로는 소수는 아니지요. 물론 압도적인 다수가 합헌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5 대 4로 합헌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병호 위원** 아니지요. 위헌제청이 되었는데 위헌판결이 내려면 6명이 위헌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명이 안 되고 5명이 위헌이라는 데 손을 들고 4명이 합헌이라는 데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헌판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존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일단 판결은 그렇게……

○**단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대법관 다수는 위헌이라는 데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데, 일단 우리는 법 절차에 따라서 6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병호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형식상으로는 합헌 결정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에서도 이 문제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일도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단병호 위원** 그 부분은 ILO에서도 끊임없이 권고해 왔던 사항이고, 사실 업종으로 봐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단병호 위원** 그것은 장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정부가 제출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가 포함되면 고용안정기금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대체적으로 연 얼마나 나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용정책심의관이 답변드리게 할까요?

○**배일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장관님께서 하시지 말고 국장님들이 나와서 실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러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이채필** 고용정책심의관입니다.

현재 고용 관련 법령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구직자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간혹 이런 근거가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 나아가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펴기 위해서 명문화한 사항이고요. 현재도 구직자를 상대로 취업 알선을 한다든지 직업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액이 얼마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따로 추계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것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대상자가 달라지는데……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이채필**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래야 고용안정기금이랄지 이런 부분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것이 제대로 되지요. 나중에 한번 꼭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이채필** 예.

○**배일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존경하는 이목희 의원께서 제기하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도 지금 이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대상, 경우는 다르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고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서 걸릴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의 추계를 한번 내 보시는 것이 이후에 예산을 확정해 나가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성진 위원님.

○**孔星鎭 委員** 정부 법안 중에서 중앙고용정보원으로 법인화시켜 가지고 한국고용정보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차이가 뭐니까? 뭐가 좀 잘 안 됩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금 현재는 중고원이 산업인력공단의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큰 제약이 있고, 따라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가공과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독자성을 부여함으로 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을 시키고자 합니다.

○**孔星鎭 委員** 아니, 오히려 이런 것은, 최근에 결혼정보회사라든가 아니면 리쿠르트회사라든가 민간 사설 전문가나 혹은 취업자들을 연계해 주는 그런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런 조직을 활용해도 될 텐데 굳이……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작업은 지금 현재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정보망이 대체로 민간 부문까지 합쳐서 9개가 있는데 네트워킹을 해서 2007년까지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 경우 고용보험 등에 의한 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고용정보원에서 지금 현재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 작업은 동시에 해 나가겠습니다.

○**孔星鎭 委員** 글썄, 그것이 명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에 이런 조직이 있으면서 민간 부문과 네트워킹을 보다 활성화해 가지고 취지, 목적…… 정보 연계를 해 주고 취업 연계를 해 주는 것도 사실은 크게 따로 독립법인화시켜 가지고 이것이 노동부의 또 다른 산하기관으로서 퇴직 공무원들의 구직처로 전략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용정보원을 맡고 있는 원장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 전문가이고 앞으로 특히 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이 일을 전담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객관적으로 분명히 이것을 독립 법인화시켜야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 차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독립법인화시켜 가지고……

○노동부장관 김대환 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유능한 전문가들을 확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직이 그야말로 드러나지 않고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이쪽에다 자꾸 배치하는 그런 폐단들이 있어서 최대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하려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런데 그것은 관리 및 운영의 문제이지 법규나 이런 제도의 문제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법규로 이렇게 독립법인화 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으면 산업인력공단의 인사나 예산의 제약 속에 놓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공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 勤勞基準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선 의원 대표발의)(배기선·원혜영·신기남·최재성·엄호성·정봉주·김태년·정성호·유기홍·한병도·주승용·김태홍·지병문·임종석·장향숙·맹형규·최성·이규택·박기춘·정청래·김희선·김선미·유정복·서갑원·구논회·이은영·유승희·이영호·백원우·이해봉·한명숙·심재철·황우여·신국환·노현송·이상경·이근식 의원 발의)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8. 最低賃金法 一部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9.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염동연·김낙순·김종률·노현송·박상돈·박재완·박찬숙·신상진·심재철·서갑원·서재관·선병렬·안상수·이근식·이상경·이시중·이영호·이원영·이해봉·우제창·엄호성·정성호·조일현·최인기·한광원·황우여 의원 발의)

10.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안민석·박찬숙·황우여·이재오·이성권·엄호성·김희선·강혜숙·서갑원·서혜석·심재철·장향숙·김현미·박상돈·심재덕·서재관·한광원·한명숙·유승희·장영달·홍미영·조배숙·최순영·이미경·이은영·최규성·민병두·유시민 의원 발의)

(11시16분)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배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염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단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의원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의 최소 근로조건을 규율함에 있어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고 그 내용 중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시급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범위에 현행 근로기준법 중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조항 중에는 제30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71조(생리휴가) 및 제73조(육아시간)를, 그리고 개정안으로는 신설되는 조항 중에서 제30조제3항(요양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영세사업장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조항, 이를테면 해고보호 조항, 근로시간 및 휴식에 관한 조항,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조항, 모성보호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적정화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감안하여 우선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영세사업장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해고제한 규정 및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4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및 적정한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서는 해고제한 규정 및 구제신청 규정이 이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업무상 재해자 및 산전·산후의 여성에 대해 해고를 제한하는 조항은 지금도 영세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도 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조항은 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부당하고 현실에 있어서도 모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위와 같은 사유의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기숙사규칙을 근로자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주지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기숙사규칙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 또는 기숙사규칙을 지체 없이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사용자는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액수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임금액수·근로 시간·담당 업무·근로 장소 등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구두로 통지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사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노동자 자신이 입증할 수 없는 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조건 사항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사용자는 재해근로자 및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뿐만 아니라 해고의 예고도 하지 못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였다가 사업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노동능력 상실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당해 근로자에게 남아 있는 노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이 법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의 책임 부담 여부와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2단계 이상의 도급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이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 직상수급인이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1단계 도급에 있어서도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에는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개정된 것인데 위 문장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한 차례의 도급 관계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 법이 통과된 직후 일부 원청업체들은 자신이 1단계 도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1단계 도급자와 2단계 이상의 도급자를 구분하여 처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장이 위와 같은 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우리 상임위가 위 법안을 의결할 때에는 그 문장이 위와 같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한 안에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데 위 문장은 노동부

의 유권해석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1차 도급 관계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법문의 표현을 가다듬기 위해 위 문언을 수정하는 바람에 예기치 않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해석상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고 애당초 우리 위원회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져야 할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제1호에는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라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에 이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직상수급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건비 단가를 강압적으로 책정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역시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합의를 한 가운데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결정하면 직상수급인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단가는 형식적으로는 하도급 계약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형식적이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위 규정은 해석 방법에 따라서는 무의미한 규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 규정을 개정하여 도급인이나 직상수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 그 자체가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이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이 법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단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앞으로 설명은 좀 축약해서 간단하게 하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이시니까 소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의원**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위원장 이경재** 거의 줄이지 않고 나간 것 같아요.

다음은 전문위원,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대비표를 보시면 제5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근로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산전후휴가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사업주의 경영상의 이유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재계약이 거부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의도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맺어진 근로계약의 효력이 산전후휴가급여 보장을 이유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근로자 보호의 실익은 크지 않으면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가임여성 고용의 기피, 출산을 감안한 근로계약 기간의 단축 체결, 그리고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는 책임 부과에 따른 기업 경영상 부담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10조(적용범위)입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10조는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현행 대통령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30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와 이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조항 중 제30조 제3항(요양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 제10조에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이 대통령령에 유보되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법으로서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동법의 적용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여 대다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 여건 및 법 준수 능력, 잦은 기업 변동 및 근로자 이동, 근로감독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확대 폭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 이신 단병호 의원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46조(벌칙)제2호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대비표를 보아 주시면 현재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윤락행위,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른 음란행위, 신체적 접촉을 통한 유사 성행위 및 성 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이 조항은 명확성이 없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벌칙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해서만 판결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공중위생 부분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 내용을 일부 담은 대신 성 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동 판결문에 없는 사항으로서 건강상 위해 발생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법자가 만약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주로 성도덕에 유해한 업무, 즉 윤락행위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 예컨대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 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겨냥하였다면 이러한 의도를 특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고드린 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34조(허위구인광고 등 금지)에서 당해 사업장에 관한 불법업무 종사자를 모집하는 구인광고나 구인조건의 제시 금지입니다.

개정안의 경우 직업소개사업·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현행 허위 구인광고나 허위 구인조건 제시금지에 더하여 “당해 사업장에 관한 법령에 저촉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모집하는 허위 구인광고나 허위 구인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내용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나 다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법령에 저촉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모집”하는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소개사업·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등이 현행 규정상 허위 구인광고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 따라 누구든지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된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배기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 법 자체로 봤을 때는 인위적인 계약 연장이 실제로 실익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이대로 바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단 이게 지금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에 직장 복귀율도 매우 낮고 그다음에 임신 등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발의한 법에서 제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의 취지, 이런 부분은 살리면서 뭔가 노동부에서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 일단 장관께 묻고 싶고요. 그것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병호 의원께서 다시 또 발의하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 때 이 법안은 일단 본 위원이 발의한 법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단 의원께서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 의원님께서 근기법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확대하자는 법안을 또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취지는 바람직하고 그래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현실적 여건도 또한 동시에 감안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염동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직업안정법의 경우는 크게 조항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 모집 시 금품수수 금지대상에 추가하겠다, 채용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일단 현행 근기법에 이에 대한 규율이나 규제가 가능한 요소들이 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를 제대로 더 적극화하고 활성화

시키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중위생과 공중도덕상 위해한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자 이 부분에 대한 구체화의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단지 이에 대해서는 보다 좀더 표현을 다듬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조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신 여성근로자에 대한 이와 관련된 보호방안은 저희들 노동부 입장으로는 임신을 이유로 해서 계약 연장을 자동적으로 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여성근로자 보호라는 원칙 또 그보다 더 보편적인 자유계약의 원칙과 이것은 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보호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저희 노동부에서는 이것을 강제하지는 않되 그러한 여성근로자를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사용자에게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보다 그런 제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장려금 같은 형태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계속 고용을 했을 경우에……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계속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조정식 위원** 그런 방향으로 법적 강제보다는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원리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재** 조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근로기준국장 나와 보시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근로기준국장입니다.

○**배일도 위원** 지금 존경하는 단병호 의원이 제기하신 근로기준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의 적용범위, 이것은 몇 번 얘기한 것인데요. 기준국장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불렀는데요.

지금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까 현실적 조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목적이 뭐고, 근로기준법 제정의 교과서적인 목적이 뭐고 어떤 점 때문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는데, 전문위원한테도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죽 이렇게 설명하시고 ‘다만’ 또 ‘특히’ 이렇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앞으로 명료하게 해서, 종이도 낭비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요. 반대면 반대다, 찬성이면 찬성이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근로기준법의 전체적인 목적은 근로조건을 정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는 영세 사업장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방향이라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보게 되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영여건이 열악하고 법 준수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법령의 실효성 문제가 저하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력이 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99년도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확대 문제는 이와 같은 여건, 즉 기업의 경영여건이라든지 법 준수능력 이러한 등등을 종합해서 점진적으로 우선적 규정이 어떤 것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확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이게 항상 안 되는 이유가 나는 노동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해야 되니까.

이 근로기준법을 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게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자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이 조건을 부여받아야 최소

한도의 인간다운 삶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아까 현실적인 여건과 행정적인 지금 현재 법이 미치는 부분 또 법의 실효성 부분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면 공무원을 더 모집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조건으로 4인 이하가 열악하면 오히려 근로기준법은 정해 놓고 4인 이하 사업장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든지요.

그것 한번 노력을 하신다든지 하고 또 독일 빼 놓고 숫자로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독일 제외하고 주요국가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국가 중에서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독일은 지금 제외해 놓고, 다른 법으로 지원법이 또 있잖아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위원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노동부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조건 실태와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실태, 의식, 면담조사 등을 하고 있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도 참고로 하고 추가적인 용역이 있다면 더 추가적인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시기라든지 내용 이런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래서 지금 정도는 이제 기준을 우리가……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근로기준법 중에 딱 두 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과문해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 조항하고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에서 법률로 중간착취를 인정해 준 이 용어 또 이 조항, 이 두 개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국가가 최저기준을 보호해 줘야 될 대상은 열악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마련해 줄 것인가 해서 무조건 사업주에만 미룰 게 아니라 지금 고용부담금도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업주도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최저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줘야 될 데는 노동부일 것 같은데 자꾸 이 부분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위원님, 현행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든지 균등처우, 폭행금지, 중간착취의 배제와 같은 총칙적인 규정은 현재 4인 이하

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또한 근로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또 분쟁의 요인이 많이 되고 있는 임금관련 규정도 현재 임금지불 제42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4인 이하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퇴직금 관련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지난번 통과된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분, 부분 떼어서 보자고 할 게 아니라 몇 가지 안 남았잖아요. 4인 이하로 적용했을 때 기업주가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별로 크게 지금 없잖아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예.

○**배일도 위원** 지금 현재 산재법 같은 경우도 너무 확대되어서……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규정이라든지 시기,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태 위원**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지금 적용제외 주요사안이 아까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당하 이유 없는 해고금지조항 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의 제한, 연차휴가, 생리휴가, 취업규칙 이런 등등이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병호 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말씀하세요.

○**단병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 법안을 내면서 사실 고려했던 것이 기업의 영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을, 비용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을 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은 사실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않았습시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노동시간을 보게 되면 4인·5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4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노동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을 초과근로 시간까지 다 가산

하는 것으로 적용시키게 되면 중소기업에 너무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고려해서 뺐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또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장복심 위원님!

○장복심 위원 단병호 의원님이 내신 근로기준법이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동감하는데요, 현재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안 제13조, 그리고 제115조와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비치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나 현행 규정으로도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고요,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는 벌칙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병호 의원 제가 냈으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로 사업장 내에서, 영세사업장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비치되어 있느냐 하면 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데 비치되어 있기보다는 사무실 내에 비치해 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자기의 취업규칙을 일일이 사무실에 가서 관리자에게 확인한다고 하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 게시의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의 규칙을 보고 거기에 따른 자기의 어떤,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로 비치와 게시 의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사업장은 그것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 비치된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지요. 거의 없고, 사무실 내에 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사실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눈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당히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근로조건, 취업규칙을 보러 간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사용자가 현장에 비치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

에 이것은 의당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장복심 위원 현재 그렇게 안 하면 벌칙규정이 있잖아요?

○단병호 의원 그것이 게시 및 비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비치를 사무실 내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는 데가 아니라 관리자들이 있는 사무실 내에 하나 걸어 놓아도 그것이 비치로 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사무실까지 일부러 그것을 보러 가고,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이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의 취지가 그대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장복심 위원님 다 하셨습니다?

○장복심 위원 예.

○김형주 위원 김형주 위원입니다.

이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금 제34조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고쳐진 개정안에 보면 “당해 사업장에 관한 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노동관계법이라든지 환경관계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말로 법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금 현재 법안 문안만 보면, 당해 사업장에 관련되는 법령 하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환경, 노동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다른 종류의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어서 적시될 수가 없는 그런 법문 설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주 위원 총체적으로 볼 때 사실 제34조를 뜯어고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을지 그런 판단도 있어야 되겠습니까마는, 예컨대 제18조, 제19조의 경우에 무료 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이러한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모르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허위구인광고로 규정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또한 덩달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허위광고를 하고 그러한 구인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구인 의뢰를 할 적에 다르게

얘기를 하고 부락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적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런 업소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처벌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쨌든 이 법에, 이경숙 의원님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사실은 성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많이 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법 개정안을 기술해 가지고 과연 그 취지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 법 개정안을 냈다면 그 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제 설계를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단병호 위원님!

○단병호 위원 염동연 의원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장관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염동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제32조(금품등의 수령의 금지) 조항인데요, 저는 직업안정법에 직무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채용 및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자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나 하면 누군가가 직무를 이용하여 응모자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8조, 제8조에 “누구든지……” 죽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여기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요, 또 형법상으로도 보면 배임수재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직업안정법에 다시 명시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동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근로기준법 제8조를 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규제할 수 있고, 거기 벌칙을 보면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굳이 개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그리고 이경숙 의원하고 두 분이 같이 발의한 내용 중에 보면 공통된 것이 제46조 조항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한 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46조제1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46조제1항제2호에 보게 되면, 현행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죽 있는 것을 성매매행위와 윤락으로 딱 제한시켜 버림으로 해서 원래 제46조 근본취지가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불량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집한 것은 죄가 안 되느냐, 개정안대로 가게 되면 처벌에서 빠져 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기도박단을 모집하면 처벌될 수 있는데 제46조제1항제2호로 바뀌어 버리면 그런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매매라든가 윤락행위로 제한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은 살리되 이 부분은 따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동감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요사이 워낙 성매매 관련해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화한 것 같은데 이 구체화를 통해서 오히려 원래 공중위생, 공중도덕에 해당되던 것을 아주 좁혀 놓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형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시다마는 이것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법제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좋고 공중위생, 공중도덕은 일단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손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10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12·13·14·15항인데 현재 대표발의하신 분들이 안 계시고 채수찬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15항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률안(채수찬 의원 대표발의)(채수찬·김명주·김양수·김종률·김재원·김혁규·노영민·박기준·박승환·심재엽·우제창·이계안·이목희·이시중·이인기·최규성·최인기 의원 발의)

(12시00분)

○**위원장 이경재** 의사일정 제15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채수찬 의원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찬 의원** 열린우리당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입니다.

국회 규제개혁특위의 의결을 거쳐 동료의원 16인과 함께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에 대한 조사권 발동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전통지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 관련 사업체에 대한 조사자료 제출 및 보고요건을, 첫째 민원인 등으로부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신고된 경우, 둘째 노동부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셋째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넷째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 관련 사업체에 대한 조사요건을, 첫째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만으로는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셋째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함으로써 행정권의 발동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조사일시와 조사내용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통

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법안 통과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 부분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 안 제38조(보고 및 조사)제1항 파견관련 서류제출 및 보고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동법에 의한 보고·검사는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노동부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보고와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제출 및 보고는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에게는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부 또는 허위 보고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으므로 노동부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구체적인 요건규정과 관련하여 제3호의 “사회적인 물의”라는 법문은 불명확한 표현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제4호의 경우 일반조항으로서 이로 인해 1호에서 3호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령 등에 구체적으로 요건을 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미 제기된 파견근로자보호등

에 관한 법률안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께서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노사정책국장님!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은 아마 근로기준국장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배일도 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제3호와 관련해서……

○노동부장관 김대환 파견근로자 관련 법은 근로기준국 소관입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근로기준국장입니다.

○배일도 위원 이 파견법은 파견법이고 또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관계조정법인데, 지금 이 법 제38조제1항제3호를 보면 이 법과 관련하여 노사분규 등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여 조사가 필요한 것은 노동부장관이 조사하도록 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 방안으로서 민원인에 의해 신고된 경우, 또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서 생기는데,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노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경우로 규정을 명시해 놓음으로 해서 요건을 법에다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일도 위원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데 파견업과 노사분규가 어떤 연관성이 있지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하고……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고용 관계에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도 이 법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 있지 않아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예.

○배일도 위원 그리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도 감독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예.

○배일도 위원 그런데 여기서다 굳이……

이 법의 취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리고 파견업체에 대한 의무 규정을 담아 놓은 것인데 거기에 꼭 이것을 집어넣어서 여기에서도 규제하고 저기에서도 규제하면 오히려 규제 목적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법 취지에도 어긋나고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종철 파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파견이라든지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 이런 3자의 관계에서 분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파견법에도 그것을 명시화시켜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의지를 보다 더 실어 놓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제38조(보고 및 조사)제3항에 두 가지 사전 통지 절차 신설, 물론 앞서 채수찬 의원께서 제안하신 여러 안들도 이 항과 직간접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좀더 민주적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종길 위원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신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파견업체가 영세하고, 또 서류 등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불법파견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장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폐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인 파견업체라고 했을 때에는 행정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상당한 이유……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일반적인 다른 입법례에서도 거기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때 근로감독관이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되면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의 그런 사안들을…… 검진지령서에 그런 소정의 내부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제종길 위원** 그래서 법에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견업체들이 대부분 합법적이고 견실하고, 또 지금까지 불법이 굉장히 있었던 경우가 없었다면 지금 채수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규제를 제한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금 아주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파견업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사전 통지하고 가서 조사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투명함을 제고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방금 이 두 조항을 같이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행정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제도를 거치되, 만약 그런 경우에 증거인멸이나 등등의 우려가 있을 적에는 현장에서 판단해서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도 점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종길 위원** 제 생각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환경노동 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의 합법성을 유지하고…… 또 저희 환경부에도 그런 법들이 많이 있지요? 기본적인 환경 여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이렇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 관련 법에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과의 형평성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김형주 위원님!

○**김형주 위원** 저도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법의 경우 제38조에 노동부장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나 예를 들면 민원인 등으로부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신고된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신고보다는 제3항에 있는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규제위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사전 통지에 대한 규정들이 삽입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현행 환경 분야의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의 명으로 관계 공무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전 통지하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을 훨씬 더 높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업주 위주의 행정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래서 그것이 양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예컨대 신고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현장 근로감독관의 정황 판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증거인멸라든지 등등의 우려가 없다면 사전 통지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채수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이계경·정두언·김태환·이성권·엄호성·이해봉·전재희·이은영·이재오·박계동·박찬숙·김석준·서병수·고조흥·정희수·안상수·김충환·배일도·이원영·정화원·김태년·김문수·김영숙·이혜훈·홍미영·최순영·박재완·김희정·이경숙·박종근·황우여 의원 발의)

1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이명규·손봉숙·김애실·나경원·신상진·이주호·박세환·김재원·엄호성·공성진·김태년·황우여·고조흥 의원 발의)

1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技能장려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애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정부에서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정부에서 제출한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항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 및 14항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동부 소관 2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하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기관·단체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사업주로 하였고, 둘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사업주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차별시정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방노동청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시·도지사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둘째 노동부장관이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개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1. 안 제19조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입니다.

이 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조부모나 가까운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육아휴직을 통해 직접 양육하고 있는 실정인바 개정안의 취지가 3세 미만 영·유아를 둔 여성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선택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육아휴직기한의 연장조치는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 1세 미만의 영아와는 달리 3세 미만 유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에 따라 근로를 중단하는 것보다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맡기면서 가서 계속해서 근로를 하도록 보육시설을 대

폭 확대하는 정책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분담 확대, 유·사산휴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3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재원부담 문제, 기업경영상의 부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나. 안 제14조 및 제37조입니다. 성희롱 피해주장근로자에 대한 사업의 의무적 보호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주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성희롱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종래의 주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성희롱 예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린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 안 제2조(정의)제3호·제4호 신설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념 도입과 근로자 개념의 정의입니다.

개정안은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는 용어로 개념 정의하고 근로자의 개념을 종래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외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적극적 조치는 성·인종·장애인 등 차별 집단에 대한 고용목표 및 이행계획을 정하여 그 목표와 계획이 달성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불이익 없는 잠정적 조치로서 다양한 법제와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교육 등 적용분야는 다양합니다.

개정안의 경우에는 고용분야에 도입을 전제로 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개념정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조치에 대한 개념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개념을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모집·채용 시 차별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해당됨에 따라 근로자개념을 보완한 것으로 현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도 동일한 입법예가 있습니다.

보고드린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 조항별 검토 가. 안 제11조(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운영 관련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보고드린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 아무도 대체토론을 안 할 것 같아서 저라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안에 대해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적절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라고 할까 문제를 좀 느끼는 것은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도 좀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이 개정안에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들의 70% 이상이 여성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기혼 여성 같은 경우는 4명 중 3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사실 남녀 차별보다 기업 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개정하

려면 고용 형태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법으로만 강제해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여성 고용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마라 하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서류를 제출 받을 때 직종별·직급별 이렇게 제출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고용형태별에 대한 것도 제출하도록 명시를 한다면 사업주가 이후에 여성노동자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고용형태별도 같이 넣어서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규모별로 보면 공공기관·단체 해서 1000명 이상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낮춰서 300명이라든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당장 100으로 낮춰서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300명 정도로 낮춰서 시행한다면 좀더 정부의 개정법률안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우선 정부 제출 남녀고용평등법의 기본 취지는 남녀 성별 차이입니다. 그야말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는 선진국에서 나름대로 정착된 제도를 남녀고용평등에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퍼머티브 액션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에서는 인종이라든지 연령, 장애 이런 쪽으로 하지 고용 형태에다 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여성근로자들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으로 남녀에 관계없이, 그렇지만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시행된다면 자동적으로 여성들의 고용 질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적용 대상을 좀더 소규모 사업장까지 낮추자는 말씀은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단계이니만큼 성과를 봐 가면서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도·설비를 개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니다.

그래서 우선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도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구체적인 의견은 소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목희 위원님!

○이목희 위원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른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여 시행계획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든 사업이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있어야 할 텐데요.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든지 지키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기는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통해서 유도해 가야 하는데 사실 인센티브라는 게 말만 인센티브지 그냥 유명무실한 경우에는 사실상 권고적 수준에 이를 수 있는데,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정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가장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조세 관계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재경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조세특례법 관련해 가지고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 주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의 경우는 이러한 실적이 있을 경우 공기업 평가에 반영을 하고 기업들이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지금 현재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다양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지금 장관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인세에서 일정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잘 아시다시피 조세를 좀 감면하자면 재경부는 일단 난색부터 짓고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는 전 정부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의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김애실 의원이 제안한 남녀고용평등법 내용 중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주던 육아휴직을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의도가 있는데요,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취지는 좋은데요, 이상적이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산전휴가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현 단계에서 3세까지 점프를 하게 되면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실질로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나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이런 법안이 나온 취지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세에서 3세까지 여성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함으로 해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성의 근로의욕 같은 것도 떨어지는데 또 실제로 3세까지 확대해 놓으면 여성이 근로할 기회를 스스로 놓침으로 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두 취지를 살리는 방법은 보육기관을 폭넓고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협력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성들 사회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을 늘리는 쪽으로……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분담 문제인데요, 이것은 아시겠습니까마는 전 정부적으로 획기적인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김애실 의원이 제안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분담 확대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종길 위원** 기능장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지방에서 하는 기능대회, 지방의 시·도에다 위임하고 상금도 그쪽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함께 기능올림픽에 다녀와서 느낀 바는 이 기능장려법하고 기능장려법시행령, 시행규칙들이 개정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능장려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기능장려법시행령, 이하 규칙에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이 법률의 내용을 저희들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내지 1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6.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17.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1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

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19.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희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14시55분)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단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의원**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 보험급여의 종류에 재활급여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재활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재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재활급여의 종류는 직업재활, 사회재활, 심리재활로 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요양기관을 법정화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재노동자의 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요양기관을 법정화하여 모든 의료기관이 산재환자의 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요양기관에서 근로자를 진료한 의사 등으로 하여금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요양기관이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문의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산재여부를 판단하여서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요양기관이 근로자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노동자가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 경우에도 공단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산재급여를 전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진료비가 많이 드는 1주일 사이에 산재가 승인되는 비율은 전체 사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만을 따로 산정하면 그 비율이 훨씬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를 당하고 초기에 1주일 사이 비용이 많이 들 무렵에 산재 판정이 나지 않음으로 안정적인 진료를 받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경재 위원장, 배일도 간사와 사회교대)

다섯째,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공단이 하듯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라는 규범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대신 산업재해분류기준표상의 점검사항에 부합되게 판단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확장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산재법 제10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제외한 보험 가입자는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사건에 대해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사업주가 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사업주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일곱 번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등이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등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이 법안이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어제 환경부 관련된 파산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취지하고 동일합니다. 파산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구제될 수 있는 방안들을 법 개정안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일도 단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네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근 의사일정 제1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1조(목적)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규정을 “치료·보상·재활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재해예방 및 사회복귀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실시”로 개정하고 아울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목적에 규정하여 산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나 산재보험은 산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당연지정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산재환자의 진료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진료수가에 의거 지급하는 제도로써 당사자 간에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는 산재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재환자를 의료기관이 수용토록 하여 현물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의료기관 지정제도를 건강보험과 같이 당연지정제도로 바꿀 경우 산재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일부 종합전문병원의 지정 기피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달리 업무상 재해 여부, 요양연기, 전원(전원), 급여청구 등 산재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서비스 제공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일부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부당청구, 장기요양환자 방치 등 요양 관리상의 부작용이 증가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종합전문병원이 산재요양기관의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당연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것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의사일정 제18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세 건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각 법률의 자격규정에서 그 제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의 검토의견도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세 법률안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배일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어느 분이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은 통에 전혀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강길부·박영선·정봉주·제종길·단병호·장향숙·장복심·임종석·신상진·김형주·이상경 의원 발의)

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23. 韓國産業人力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技能大學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05분)

○**위원장대리 배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정부가 제출한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일도 위원장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 발생 원인조사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여 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고 현장이 훼손되어 버리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매일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시 노동부장관이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원인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장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동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산재발생의 원인조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일도** 검토보고는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0항, 제22항~제24항, 네 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그 재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사업장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게시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영업비밀을 인정하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사업주가 영업비밀이라 인정하더라도 당해 물질의 성분 및 함유량을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전·보건 관리 대행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조정,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최대 3세의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토록 하였고,

둘째,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 형태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해당 표준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를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률 계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기술 변화, 지식기반산업의 확대 및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을 기능사 양성훈련 위주에서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으로 재편하고, 공단의 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능을 공단 산하에 설립된 기능대학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단의 사업은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평생학습 지원, 해외취업 등 고용촉진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공단의 전문적·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사업본부장은 상근이사 또

는 해당사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토록 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단 산하에 설치·운영 중인 직업전문학교를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통합함으로써 관련 시설·장비 등을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술·기능인 양성훈련을 주로 수행하던 기능대학으로 하여금 중소기업근로자 등에 대한 향상훈련 및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하고, 산업현장의 기술 변화에 신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대학 교직원과 산업체 직원 등이 상호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배일도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능대학이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대학으로 하여금 평생직업능력개발훈련,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능대학 교직원과 산업체 직원 등이 상호 파견근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능대학의 시설·장비 등을 대학·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노동부 소관 4개 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12페이지 상단입니다.

라. 안 제66조의2(벌칙)에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입니다. 이것은 신설조항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상의 조치 또는 보건상의 조

치 위반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그 위반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망률이 선진외국에 비해 높음에도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벌이 일반재해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망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형법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의 형벌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고려하면 현행 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에서 처벌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여 실제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법에서의 가중처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가기간시설의 손괴 혹은 중대한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등에 한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형벌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처벌법규 입법 태도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개별사업장에서 공중의 위험과는 관계없이 사고에 대한 가혹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5항입니다. 이것은 실질적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된 때부터 5일 이내에는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장관이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원인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장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4항은 현행법의 제26조제4항과 제5항을 함께 규정한 것이며, 안 제26조제5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 보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 및 유형을 파악하여 그러한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예방조치의 기초가 되는 재해현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동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사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중대재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령에 의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보존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중대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관할 노동관서에 재해발생 보고를 하고, 감독관은 보고를 받은 즉시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은 현장보존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정안과 같이 모든 중대재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현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특별한 조사가 필요 없는 사고의 경우에도 장기간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중대재해의 원인조사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6조제4항과의 법조문 간의 내용상의 충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현장보존기간을 5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중대재해 유형에 사망자의 발생뿐 아니라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일률적으로 규정짓는 것은 개별사고를 규율함에 있어서 구체적 합리성을 결여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드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의2(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신설입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의 마련입니다.

제19조의2는 신설조항입니다. 그중 뒤에 있는 용자·지원 시 중증·여성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2월 말 현재 의무고용사업장에 소속된 장애인근로자 중 여성과 남성 비율은 각각 11.3%와 88.7%로 여성장애인 고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비율도 각각 82.4%와 17.6%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지나치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적극 도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보고드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목적) 및 제6조(사업)은 공단의 설립 목적·사업 범위의 조정입니다.

6페이지 주요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취업알선 등”을 빼고, 제6조에서는 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지도” 삭제, 제2호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의 삭제, 제6호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 등 사후관리” 삭제, 제9호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 삭제, 제11호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분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조와 6조에 빠진 부분은 기능대학이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과 관련된 26조(산하기관) 제1항은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에 의하면 26조에 있는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 사실상 공허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여야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목적) 및 제4조(사업) 기능대학법의 목적 및 사업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행 목적 규정을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산업인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을 개정하고, 기능대학의 사업을 현행 다기능기술자 및 직업훈련과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매체·과정개발, 교육·훈련생의 진로 및 취업지도, 중소기업기술지도 등 산학협력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훈련기관의 개편 취지에 따라 기능대학이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목적과 담당사업 범위를 확대·조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훈련기관의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21개) 및 기능대학(24개)을 통합하여 대형화하고 이를 지역·분권화를 추진함으로써 동일 경제권역 내에 있는 훈련기관을 1대학 1캠퍼스 체제에서 권역별 1대학 다수캠퍼스 체제로 전환하여 소규모 훈련기관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통합·대형화에 따라 기능이 전환되는 훈련기관의 양성 훈련은 인근훈련기관으로 이관하며, 유휴시설을 매각하거나 공단 또는 기능대학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훈련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효율화는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훈련기관의 통합·대형화에 따른 행정지원인력 감축 등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절감하고, 동일 생활권 내에 설치된 훈련기

관의 독자적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중복 투자 및 유사훈련 과정의 중복 설치 등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합 범위와 관련하여 공공직업훈련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이 개편에서 제외되었고, 소속 직원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의 불충분, 공단 직업전문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관련 직원 및 재산의 이관 문제, 통합 시기 등에 관하여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는데요.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이와 연계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는 우리 일정에 잡혀 있는 공청회 이후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재**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또 그쪽에서 해서 바로 소위에 넘겨야지 갖다 다시 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제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저도 지금……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질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장 이경재** 질의가 많다고요? 질의 많이 하시지요.

○**배일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공청회에 노동부 관계자들이 나오지요? 그러나 장관은 내일 공청회에 참석 안 하시니까 장관을 상대로 하시는 기본적인 질의를 여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기능대학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면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을 좀 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대학하고 산업인력공

단에 나뉘어져 있는 직업능력훈련을 한곳으로 모은다는 취지에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 취지에 동감을 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훈련을 시킬 수 있어서 그동안 현실에 뒤떨어져서 직업능력훈련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그동안의 상임위에서 나왔던 그런 것을 모두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법안을 개정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능대학하고 산업인력공단하고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동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동의 과정이 미흡해서 추진 과정에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직업훈련기능이 기능대학으로 통합·일원화될 경우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상담과 직업훈련교사로 있는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들 중에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된 기간 노동자가 173명이나 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인력대책 방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노동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워낙 산하기관도 많고 또 임시직·계약직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46.9%의 비정규직이 노동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개편 이후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정한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산업인력공단이 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되는 취약계층훈련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기능이 많이 포함되는 기능대학으로 통합되다 보면 현재에도 부족한 취약계층직업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평생학습 지원의 경우 개편안대로 보면 인력공단에는 R&D기능만 남고 교육훈련기능은 기능대학으로 이전하게 돼 평생학습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양 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절실한데 이런 것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내일 사실은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나오고 노동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능대학하고 산업인력공단, 특히 산업인력공단의 저항이 심해서 총파업까지 지금 결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저는 어차피 공공 인프라 훈련 방법은 가야 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논의를 더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옳지 않나 장관님께 질의드립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우선 전반적인 직업능력개발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의 기본적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동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과정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방금 김영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지금 현재 세심하게 챙겨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합치면 거의 70~80여 회의 내·외부회의의 절차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했고, 또 해당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혁신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죽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양 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업무 특성과 종사자의 지위를 감안해서 그 특성에 맞는 대책들을 지금 현재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을 최대 수준으로 지금 당장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부에서,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잘 설명을 하고 또 이러한 과정 관리를 해 나간다면 혁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혁신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학위 과정과 훈련 과정에 대한 비중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현장의 직업능력개발 체제에 맞도록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을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합 작업이 시작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내

부에 있어서의 콘텐츠 문제는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내부 종사자들과 또 우리 노동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이 과정은 지적하신 대로 기능대학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가려고 합니다. 과거에 산업인력공단이 이른바 경공업 위주의 산업화시대에 태어난 데서부터 이제는 크게 탈바꿈을 할 때가 되었고 우리가 지식기반경제로 나아가면서 거기에 걸맞은 체제로 개편해 나가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렴을 해서 이 과정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기능대학과 인력공단의 기능이 비슷하면서도 또 이렇게 합쳐지다 보면 양 조직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충분한 논의와 또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산업인력공단에 있었던 교사들이 교육기능이 없어지니까 기능대학으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교사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나온 안대로 하면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전문학교에 교사로 있는 분들은 기능대학으로 그대로 편입이 되어서 교수로 하고,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직 장기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추어서 일부를 정규직화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일도 위원님께서 단단히 준비했는데 빨리 하십시오.

○**배일도 위원** 이것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보시는 노민기 고용정책본부장께 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께서 산업인력공단의 기능직 노사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된 부분은 기능직의 본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공공훈련인프라 구축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고용불안에 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통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었고 그런 의견들을 저한테 노조대표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또 저도 직접 공단에 가기도 하고 다른 장소에서 노조 간부들과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노동부는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의 통합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고용 조정은 단 한 명도 있지 않다는 점을 수차 밝혔고,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기관을 합치게 되면……

○배일도 위원 몇 조에 그것이 나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적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자리라는 것이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직체계 또 업무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야 이 업무를 우리들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능대학법 개정안이라든지 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법 개정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적으로 업무 영역을 설정할 수는 없나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공공인프라 개편방안의 핵심 내용은 자격검정업무, 외국인 관리업무,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과 같이 일부 사업을 공단에 키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사람의 추가 소요가 필요한데 이것이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의 중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인력공단에서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산으로는 전혀 고용 조정의 요인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와 같은 점을 수차 밝힌 바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거기에 그런 견해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을 텐데 직접 그런 부분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나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했고, 방금 위원님께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노조 간부들에게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불안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해가 되지 않았느냐……

○배일도 위원 잘 이해가 안 됐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되면 좋지요, 저는 어쨌든 본인들이 ‘아 더 고용이 안정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신뢰의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기들도 죽 보니까 그 안에서 의지는 그렇게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공훈련인프라 개편방안을 다 뜯어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의 간부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다 모여 있는 공단 대회의실에서 간담회에서도 누차 그와 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배일도 위원 내일 공청회가 있을 때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시를 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알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기관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은 실제로는 산업인력공단이나 기능대학 이 두 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자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구축이 되면 산업체에서 필요한 생산성 있는 인력을 최소의 비용으로 적기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혁 속에서 소외된 부분 또는 실업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때 그 때 교육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효과들이 나타날 텐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데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이 불안정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지금 공단이 훈련교사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직종에 있어서 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직을 쓰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업무들이 필요해서 다 계약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공훈련인

프라 혁신과 관련해서 그 자체로, 공공훈련 인프라를 혁신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가 해고가 된다는가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단순히 해고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내부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구축하되…… 그 담당하는 업무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르치는 교사 신분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릅시다라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담당하는 업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다른 부분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더라도 교사, 교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방침대로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다소 부끄럽습니다마는 노동부가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저희 산하 기관의 교사들을 봤더니 유사 정규직 교사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단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유사 정규직 교사의 수준에도달하도록 현실화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보면 자격요건을 다 구비해 놓고 다른 민간훈련기관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갖추도록 하는데 우리 노동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그런 요건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장관님이 또 고집도 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것은 하셔 가지고 차체에 확실하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기능대학법 개정안 관련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시모집 시 인프라 혁신방안에서는 이것을 ‘캠퍼스’라는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공고가 나갔다가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띄웠다가 시정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한 사람들은 그 공고문을 보고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직 이것은 국회에 법이 상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질이 급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리 내보내 버렸다는 말이지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의혹 또는 오해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우선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절치 못한 행동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통합과는 관계없이 기능대학 안에서 대학 간의 대형화 문제를 학교법인 안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법 개정 사항하고는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학교법인 측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방침이 다소 수정되기도 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법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기능대학 안에서 학교의 통폐합, 캠퍼스화 이런 문제는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해야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그와 같이 수시모집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옳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뒤늦게 알고 학교법인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정시모집에서는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현재 있는 그 대학의 명칭대로 정시모집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배일도 위원** 당사자나 이런 부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일도 위원** 노동부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면서 비효율적인 기관을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배일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께서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많은 지자체들과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지자체와의 갈등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당초에 저희들이 공공훈련인프라 혁신 추진의 기본방향은 중북부분을 해결하고 대형화를 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권화를 하겠다는 것이 인프라 혁신의 기본이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년간의 사업실적과 학교의 주변여건 등을 분석한 결과 몇 개 기관들은 통합을 하거나 다른 기능으로 개편해야 되겠다는 시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 시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또 그 시안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바라보는 시안이다라면서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배일도 위원**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저희 국장과 기능대학 이사장이 지방을 전부 돌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한 결과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주장이 맞지만 일정 부분은 효율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고 할까 또 그 지역의 균형발전 이와 같은 측면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인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공동 운영한다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운영해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노동부와 학교법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두합의가 되었고 그 구두합의를 서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개편과 관련하여 한 도시 내에 2개 기관이 병존하는 것을 통합하는 데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 양해를 하였고, 그렇지 아니한 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당분간 공동운영하기로 합의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배일도 위원** 아무튼 국가정책의 큰 틀입니다. 지자체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거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정되어서 하여간 큰 틀에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배일도 위원** 미진한 부분은 더 채워 주시고 내일 공청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알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핀란드에서 있었던 월드스킬 2005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가서 보니까, 제가 외국어에는 과문합니다마는 우리처럼 기능대로 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제에 기능대의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아마 자체 내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도 죽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 변경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기능대학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배일도 위원** 그리고 다른 부처하고도 관련되어 있겠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직원들까지도,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능, 직업훈련과 같은 단어에 대해서 평가가 인색한, 무엇인가 격이 떨어지는 듯한 뉘앙스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 그러면 마치 손재주만 가르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에 맞게 우리말로는 복합기술, 영어로는 폴리테크 이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희망이 있었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노동부는 당초에는 명칭 변경을 희망하고 초안에 담아서 부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법제처 법제심사 과정에서 기능대학법이나 기능대학의 정체성까지 건드리는 문제가 된다, 단순히 학교 이름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정체성까지 건드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용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안에는 빠진 채 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일도 위원** 하여간 시대변화에 맞게, 공공훈련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엄청난 작업이라고 보이고, 이것이 잘 되면 이후 우리 산업사회에 가져올 의미는 지난 한 산업사회에 버금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칭도 거기에 걸맞게 조정해 주고 재정도 거기에 맞게 지원이 되어서 스스로 그와 같은 개편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의미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산업인력공단 관련 질의가 있는데 혼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좀 미안해서 다른 분이 질의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무제한으로 드릴 테니까 그냥 하세요.

○**배일도 위원** 교수로 바꾼다고 했는데, 교육법도 있고 산업인력공단법, 근로기준법, 공무원법 등 정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안 공청회도 열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년을 두고 우리 사회의 일할 의욕을……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문제에 접근해보려고 그러는데, 차제에 연령을 통일시킬 수는 없나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현재 경제학교수 정년은 65세로 되어 있고 인력관리공단의 교사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와 교수를 통합해서 전원 교수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정년을 일률적으로 다 65세로 가져갈 것이냐, 일부 새로 임용되는 교수에 대해서는 정년을 조금 낮출 것이냐에 대해서 내부의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과는 달리 기능 또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에 있어서는 조금 정년을 낮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고, 반면에 어떻게 그렇게 차별을 둘 수 있느냐는 견해도 있어서 이번에는 둘 다 할 수 있도록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된 법안이 나가 있습니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보다 더 내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래도 저 개인 소견으로는 차별을 두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원래는 산업인력공단이 생기고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기능대학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사회가 업그레이드되어 있으니까 산업인력공단을 그 안으로 흡수 통합해서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좋은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는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한단 말이지요.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는 구조조정이라는 것과 같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원래 공공훈련 인프

라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엄청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개편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의혹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관리가 내려올 것 같다든지 위인설관하려고 한다든지……

저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위인설관하려면 자리를 많이 만들지 왜 더 줄이겠습니까?

○**배일도 위원** 그것은 그 나름대로 승인계통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노동부 입장에서는 왜 몰라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것들이 여러 계통에서 노정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토론회 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성의를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제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말씀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저 혼자 너무 많이 질의한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신 것 내일 공청회 때 또 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단병호 위원님!

○**단병호 위원**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지자체와 연계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공공훈련기관으로서의 취약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면 중앙부처가 하는 것과는 달리 공공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지금 공공 기능대학이든 중앙직업전문학교든 간에 공공 직업훈

런기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너무나 의사결정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의 산업수요, 그 지역사회의 기업 또는 자치단체, 교육계하고의 횡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양성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지역사회의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향상훈련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점점 의사결정을 분권화해 나갈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이 기관의 운영에 항상 관심을 갖고 여유가 있다면 재정적으로도 좀 돕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만약 그렇게 갔을 경우에 취약계층에 대한 양성훈련이라든가 국가전략산업의 육성 같은 것이 소홀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의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10여 년까지는 이 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컨트롤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취약계층의 얘기는 물어볼까 하다가 다른 분들이 물어 가지고 안 물어보았는데 그것까지 마저 답변을 해 주시네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결합함으로써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한편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역시 인력 문제인데요. 통합 과정에서 정규직은 단 한 사람이라도 고용 불안 없이 다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단병호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은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아니고 노동부에서 고용형태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불안을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아까도 말씀드렸드시피 비정규직은 어느 사업장에서나 당연히 정규직보다 더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

다.

공단의 비정규직이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노동부가 고민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문제, 3단계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비정규직들이 자신들의 고용에 대해 안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 이 해결이 잘 안 되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제종길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목적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전의 법 조항과 같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산업인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인력공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종길 위원 아니요,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제종길 위원 다기능기술자, 기능장은 그래도 상당히 숙련된 기술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제종길 위원 그런데 정작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들은 어디에서 양성합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기능대학도 전부 인력관리공단이 가지고 있었는데 2년짜리 학위 과정에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고, 대학은 학교법인이 아니고는 운영할 수 없다 보니 2년짜리 과정은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학교법인으로 공달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1년짜리는 직업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공

단이 하고 있고 2년 과정은 잘 아시다시피 기능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과정과 2년 과정은 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과상 비슷한 것도 있고 선생님의 퀄리티도 비슷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면 한 기관 안에 2년짜리 과정도 있고 1년짜리 과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과정도 있고, 이와 같은 다양한 과정을 한 학교 안에 운영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제종길 위원** 그전에 직교가 기능인력 양성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합쳐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전에도 사실은 크게 잘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법상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법 외적으로 죽 얘기를 들어 보면 법은 어떻게 되었든 내용적으로는 잘하겠다,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지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보면 “기능대학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1호, 2호, 3호, 4호 죽 신설된 것이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제종길 위원** “교육·훈련생의 진로 및 취업지도”,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그다음에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이런 일들은 현재 지방의 산업대학 및 다른 대학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능대학이 또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이런 기능들을 지방에 있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들이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종길 위원** 산업대학이요. 산자부와 관계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산업기술대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종길 위원** 예.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산업기술대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종길 위원** 많지는 않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다른 데에서도 일부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생

각하기에 기능대학이 그 지역의 기능·직업 훈련과 관련된 허브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기능들을 계속 부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질의와 이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명쾌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자료를 보아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6조의2(훈련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의3(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여기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앙정부가 기능대학에 대해서 대부분 돈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로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기능대학에 일부 돈을 댈 수 있다 또 그 지역의 사업주 등도 일부 재원을 도내 이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들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제종길 위원** 국가만 있었으면 신설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제종길 위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다 보니까 이 조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공동경영을 하다 보니까라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재원들을 모음으로써 기능대학이 그 지역사회에서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 내 근로자와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산에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있는데 필요한 기능인력들을 내국인으로 충당하지 못해서 기업인들이 굉장히 안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지금 장관님께서 제안 이유로 지역 내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과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냥 1년짜리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직교에서 하는 1년짜리는 현재 그런 기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법은 기능대학을 통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관한 정도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사회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얼마만큼 다양하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또 다른 하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종길 위원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법을 근거로 하기 전에 그런 계획들이 나와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작은 2개의 기관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중복을 줄이고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서 합하는 정도의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합하기로 결론이 나면……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합한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지요. 저도 기능대학이나 직교의 체제를 크게 개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합해서 지역별로 캠퍼스만 크게 만든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반론에 어떻게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것보다도 작년도 국정감사, 작년도 감사원 감사 또 그 사이 여러 군데에서 그와 같은 사항을 지적받았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합한다는 개념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큰 공간으로 전부 다 이전한다는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관이 중앙만 쳐다보면서 서로 횡적인 연계 없이 운영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공과를 옆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한 경우에는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직교와 기능대학이 있는데 이 두 기관

간에는 전혀 연락이 없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두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전체의 중복을 줄이면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제종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집권적이고 같은 지역에 있어도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한 것인가요? 그런 교류를 누가 못 하게 했어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저희들이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공청회를 보고 좀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장관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제41조제1항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을 보시면 “다만,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외한다)”

이 얘기는 원래 화학물질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있는 것은 작성·게시할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은 어떤 물질을 얘기하나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실무적인 것은 담당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송영중 산업안전보건국장 송영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법 제37조에 보면 금지물질이 있습니다. 황산염을 포함해서 66종입니다. 그리고 법 제38조에 보면 허가물질이 있습니다. 베릴륨이나 크롬광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발암성물질 54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도를 고시할까 합니다.

○제종길 위원 모두 몇 종이나 되나요? 130여 종이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송영중 예.

○제종길 위원 MSDS 대상 물질은 모두 몇 종이나 되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송영중** 단일물질이 한 3만 8000종 되고요. 사업장 현장에서는 혼합물질 형태로 쓰여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제종길 위원** 한 5만 또는 그 이상 되겠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송영중** 예.

○**제종길 위원** 그렇게 되면 130여 종을 제외한 나머지 화학물질은 작성·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송영중**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MSDS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이 18가지 항목이고 그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한 가지 항목입니다. 명칭이나 성분함유량만 안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근로자 건강 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들, 예를 들면 취급시 주의사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독성 등은 그대로 다 MSDS에 기재해야 됩니다.

○**제종길 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노동부가 판단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송영중** 물론 사용자가 하지요.

○**제종길 위원** 사용자가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사용자가 내가 사용하는 물질은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가 없다고 한다면 안 적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송영중** 그렇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한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 물질이 130여 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5만여 종에 비하면 너무나 적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지시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보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얘기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이고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번 사고가 나면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널리 공개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송영중**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도 특별히 문

제가 될 때, 예를 들어서 보건관리자나 다른 전문가들 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필요하면 영업비밀도 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종길 위원** 제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가능하면 모든 물질에 대한 내용이나 건강상 문제를 다 표시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영업상 널리 알릴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송영중** 예.

○**제종길 위원** 그러나 누구든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130여 종을 빼고는 다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송영중** 알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는 산업안전고시로 가 있는 것을 법으로 당겨 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송영중**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큰 틀에서 무슨 개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법에 지시되지 않은 것을 산업안전고시로 법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그 내용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내용상의 변화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목희 위원님!

○**이목희 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비용을 용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원자금은 어디서 나오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장애인고용촉진기금하고 일반회계 일부가 그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기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이게 설립·운영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물론 기금문제도 있습니다. 마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에서, 민간 부문에서 이런 것을 촉발시키는 그런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문제가 있더라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고용촉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목희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실적으로 인정할 경우에 장애인 고용효과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마 대체효과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자 지금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한, 조금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는 대기업이나, 소기업이나를 가릴 형편이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기업 자체 내에서 안 된다고 하면 표준사업장에서라도 고용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목희 위원** 기능대학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리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부처 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 이상진** 직업능력개발심의관입니다.

국·공유 재산 무상대부 부분은 현재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법적으로 우선 기능대학이 외형상 학교법인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능대학이 국가의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립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목희 위원** 정부부처 내에서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 이상진** 예,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다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목희 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제외한다” 즉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는 것을 제외한다는 것이거든요. 꼭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 이상진** 이 부분은 기능대학의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목희 위원** 뭐라고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 이상진** 기능대학의 설립취지인 현장과 직결된 기능인력 양성 그런 부분의 취지를……

○**이목희 위원** 이것이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입니다.

다른 사립학교들은 이사회 구성요건으로 어떠한 사람 몇 명, 어떤 사람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 관련 전문가들로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장, 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산업계 인사들을 폭넓게 이사로 넣기 위해서 교육 관련 법령을 약간 적용 배제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목희 위원** 제 말은 이사진을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사립학교법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의 특성을 감안해서 다른 산업계 인사들도 거기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데 기능대학을 직업전문학교와 통합도 하고 이렇게 개편하면서도 산업인력공단 산하에 계속 두는 이유는 뭐지요? 이것을 새롭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노동부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우리나라 교육법에 대학을 만들려면 학교법인이 대학을 만들거나 아니면, 옛날에 특별법에 의해 세무대학이나 경찰대학을 만든 것 같은 그런 것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완벽하게 국가가 경영하는 다른 대학으로 만들려면 독립된 특별법을 만들면 가능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쪽에서 가급적이면 기존의 대학 시스템 속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목희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가 버립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기술교육대학도 처음에 만들 때 저희 노동부하고 교육부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교육대학도 인력관리공단이 출연하는 학교법인 교육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국가가 주인이면서요.

○**이목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이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직렬을 보면 일반직, 교사직, 연구직, 기능직, 별정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사직하고 연구직은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원도 책정되어 있고 예산도 배정되어 있는데 아직 계약직을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 이상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말씀입니까?

○**배일도 위원** 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 이상진** 공단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별도의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것은 장관께서 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교사직하고 연구직을 지금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차원에서 그렇고 어쨌든 정원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배정되어 있으니까 좀 빨리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리고 노민기 본부장님, 지난 9월 2일 공공훈련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대규모 토론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위원님께서 주관했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때 배려를 해 주신 노동부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나와서 축사를 해 주신 차관님도 고마운데 그날 백종면 능력개발심의관이 아주 답변을 잘 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내일 토론회 때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책을 드릴 테니까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알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 간사, 배일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됐는데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배일도**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내지 제22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항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소위에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

길·김부겸·조경태·안상수·노현송·엄호성·강혜숙·우원식·김영덕·배일도·홍미영·신상진·이목희·임종인·김태홍 의원 발의)

26. 國家技術資格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신학용·김동철·김우남·오영식·김재운·한광원·이영호·윤원호·김현미·백원우·제종길 의원 발의)

27.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유정복·이인제·엄호성·안상수·박재완·이혜훈·이인기·공성진·신상진·박순자·이계진·정화원·고경화·윤건영·이주호·이재웅 의원 발의)

28.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이목희·강창일·김태홍·김형주·우상호·우원식·유선호·이기우·이호웅·장복심·정성호·조정식·최규식 의원 발의)

(16시40분)

○**위원장대리 배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정위원회시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맞춰서 제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외국 인력 정책의 근간을 이루던 산업연수생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외국 인력 도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 병행 실시, 다수의 불법 체류자 존재, 제도적·경기적 요인 등으로 인해 도입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을 적기에 도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 단축,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확대, 재취업 제한기간 단축, 수습기간 도입, 1사1제도 원칙 폐지 등의 제도 보완이 있었으나 고용허가제의 활용도 제고 및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의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인력 도입 및 이용 편의성 강화

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공표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외국인력 도입 현황 및 불법체류자의 수, 경제 및 고용전망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공표시기를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 침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도입한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의 발급 절차가 중복되며, 고용허가서만으로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가 가능하므로 인력부족확인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서로 통합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이 부정확한 방법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거나 준수·승인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시 기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사용자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의해 서비스업 일부와 건설업에 한해 취업이 가능한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용업종인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 어업을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허용업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인도받아 근로가 개시된 경우 사용자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근로 개시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동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근로 개시 신고가 필요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일곱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을 방지하고 체류기간 만료 후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제도를 준용한 출국만기보험이 운용되고 있으나 동 보험의 미가입시에만 벌칙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만기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을 제안설명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일도 제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정두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의원 정두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일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IMF 당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매년 40억에 가까운 예산 낭비와 30여 명의 인력 낭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제정 당시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까지 탈퇴한 마당에 노사정위원회는 없고 사정위원회만 있는 것입니다.

둘째,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 측이나 사용자 측이나 모두 대표성이 없습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조직노동자단체에 가입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0% 남짓에 불과한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정규직 노동자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막대한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누가 대표

합니까? 경총 역시 사용자 측 대표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노동계 측의 줄기찬 주장입니다.

셋째, 노사정위원회는 하는 일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다른 국가 기관이 할 일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사정위를 만들어 놓고 사회의 온갖 복잡한 일을 다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부뿐만 아니라 산자부고 재경부고 다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정위에서 논의한다고 하니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년 동안 허송세월하다가 최근에야 노동부에 넘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노사정위를 없애는 게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노사정위는 근본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잘못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합의를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 개정 사항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합의한 사항이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국회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셋째, 정부는 노사가 협상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 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와 동일하게 협상의 한 축이면서 또 협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에 어쩔 수 없이 연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됩니다. 타협은 노사가 하고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중재해야 되는데 정부가 협상의 한 축으로 타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익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협상에 연연하다 보니까 노조가 탈퇴와 참여를 거듭하게 됩니다. 즉 노조 측이 탈퇴하겠다고 하면 장관이 만나고 총리가 만나고 대통령이 만나고 하면서 정부는 계속 끌려가고 노조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탈퇴 선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과거에 노사분규가 극심할 때 노사정위가 없어도 결국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노사정위가 만들어진 이후에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상 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정 당시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과 인력을 허비하고 있는 노사정위는 폐지되어 마땅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폐지법률안을 심사·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일도** 정두언 의원님, 잘 정리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목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8항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목희입니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및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원’으로 한정하여 초·중등교육법 이외의 교원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교수노조가 결성되어 법외 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교원도 헌법과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및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조 전임자의 임명과 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법의 적용 대상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이제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수, 대학 당국, 학생, 노동부, 교육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전향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일도** 예, 민감한 문제를 아주 잘 정리해서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고용 특례자 취업허용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특례 대상 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로 규정하여 취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당초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하여는 서비스·건설업에 취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업종의 침체 등으로 입국자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에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을 추가할 경우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농축산업 및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특례제도는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이 법 제12조에 취업 허용 업종을 규정하였습니다.

고용특례제도의 경우 일반 고용허가제와 달리 용이한 입국 및 채용 절차를 통해서 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초에 업종을 구분한 취지는 서비스·건설업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외모·정서, 동 업종의 비교적 높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직종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업종을 확대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가 감소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력 도입 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9조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법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에, 종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 수준 및 학력·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설정된 국가기술자격의 수준 체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특정이 용이하고 등급체계 변경 시 자격취득자 및 검정 응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시행령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드린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동 폐지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보면 1999년 5월 24일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당초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현행법 제3조는 노사정으로 하여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18조에서는 정부,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성실히 이행 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자 간에 어느 일방이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의미 없는 결론만 양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한계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처럼 정부가 협상의 당사자가 되면 합의 실패에 따른 부담감으로 지나치게 합의 도출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민주노총에 이어 최근 한국노총이 위원회를 탈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노사정 3자 중 중요한 한 축이 빠지게 되어 이 법 제4조의 위원회 구성에 중요한 법적 흠결이 있게 되어 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그 존재 의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동 폐지법률안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하에서 정부가 협상 당사자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노사자율 원칙에 따라 합의가 안 될 경우 나중에 정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지안 이유에서 적시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심각할 정도로 노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 위기 극복 및 노사 관계 안정에 기여하는 인프라로서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여 왔던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노사정위는 98년 민주노총의 탈퇴에 이어 최근 한국노총마저 탈퇴한 이후 대표성의 한계와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나 종래 운영상의 파행과 한계는 향후 각종 노동 관계 현안을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최근 재개한 비정규직 입법 처리 및 노사 관계 선진화 로드맵 추진과 관련하여 노사 대화 등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기보다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노사정위원회가 양대 노총의 탈퇴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노사정 간의 대화 채널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중단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제도의 개편 방안에 대한 노사정 간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최근 한국노총의 특위 복귀 결정 등 노동계의 변화 조짐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06 국제노사정기구연합총회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바 동 위원회의 당장 폐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신뢰 문제 등 제 변수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 측면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감안함과 동시에 아직 노사정 대화 틀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에 비추어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향후 논의 결과와 노동단체의 복귀 여부를 좀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배일도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 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2조(정의) 교수노조의 합법화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외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노조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입법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1999년 이 법 제정 당시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원은 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둘째, 이후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수노조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관계자 의견청취 및 여론조사, 계약제·연봉제 도입, 대학별 근로조건 차이, 외국 입법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된 바 있으며,

셋째, 최근 교수계약제·연봉제 도입,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 등으로 교수 사회 내부에 신분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넷째, 내년 1월 30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 대학교수를 제외한 다른 교원 및 공무원의 노조 결성이 가능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대학교수

들의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한 입법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교수노조 허용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및 견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의 교수들은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이 허용되며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학문연구 및 교수·강학상의 자유가 보장될 뿐 아니라 대학자치 원칙에 따라 대학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학교수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고 주체적 입장에서 학사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원 근로자와는 다르며, 따라서 사회의 지식 주도층으로서 사회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교수 사회의 요구나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 형성도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될 경우 다수의 교수협의회 조직이 노동조합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며 이는 대학 사회와 대학의 교직원 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교수노조가 결성되면 그 구성원의 특성상 근로조건이나 연구 여건 개선 등 학내 문제보다는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의사 형성 과정에 개입하려 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는 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사회 불안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넷째, 허용한다고 할 경우 현행법상 설립최소단위(제4조제1항), 교섭구조(제6조제1항), 정치활동금지(제3조) 등 관련 조항을 교수노조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현재 교원노조는 시·도 단위로 노조를 설립하여 시·도 육감과 교섭하나 시·도 육감은 대학교원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칠 수 없으므로 교수노조의 설립최소단위, 교섭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교수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가능하나 이 법 제3조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법률 간의 상충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보고드린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성진 위원님.

○**孔星鎭 委員** 존경하는 이목희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대한민국의 교수입니다. 특히 한 5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수는 전 세계의 어떤 직업보다도 사실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분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시간이 많고, 거기다가 6층 이상은 엘리베이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관리가 들어가는데 5층까지는 세금만 받으면 된단 말이지요. 이래서 제일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내용……

○**위원장 이경재** 공성진 위원님, 위원장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한국말로 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孔星鎭 委員**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기본권, 근로자의 근로조건 이런 형평성인데…… 저도 대학교수를 해 보고 장관께서도 대학교수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 5~6만 명이나 되는 대학교원들 간에 노동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협의회에 포함되어 계신 분들이 한 7000~8000명 되나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교원들이 이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법규로 묶어 놓는 것이 과연, 특히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92년에 겸임교수 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일 텐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식정보 사회가 오게 되면서

소위 대학교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외부의 전문가, 예를 들면 이목희 의원님이 평소에 노동 전문가로 있을 때 대학에 가서 강연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노동법을 전공한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현장 분위기라든가 변화하는 환경에 그만큼 빨리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모셔 왔습니다. 오면서 그냥 시간 강사가 아니라 이분에게 상응하는 지위를 드려야 된다 해서 92년도에 제가 한양대학에서 처음으로 겸임교수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이 많은 대학에 퍼져 나갔습니다마는……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많은 대학교수들이 왜 ‘교수’ 자를 붙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학마다 보통 7, 8개의 서로 다른 교수가 있습니다. 1년짜리 계약교수도 있고 연구소에만 있는 연구교수도 있고 혹은 외부에서 전문가로서 석좌교수도 있고, 석학교수도 있고, 초빙교수도 있고, 대우교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대학의 적응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마땅한 지적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학교는 노조 설립이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대체토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목희 의원** 제가 답변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孔星鎭 委員**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이경재** 다른 위원님, 토의하십시오.

○**단병호 위원** 이목희 의원이 답변을 안 했으니까 좀 반대되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성진 위원이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라 치더라도 헌법이나 각종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학교수도 엄연히 임금을 받는 한 노동자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 권리를 법률로 제한시켜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요즘 대학교수들의 한 50~60% 가까이가 비정규직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리고 일반 정규직 교수들에 비해서 실제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알려진 일반적인 교수라고 하는 직함과는 달리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도 불안하고 또 조건상으로도 볼 때 옛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수라고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늦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리어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우리가 공무원법 논의할 때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마는 단체교섭에 대해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후에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확대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까지 다 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도리어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안된 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종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외국 국적 중에 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라든가 건설업에는 취업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일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취업하도록 되어 있고 서비스업이라든가 건설업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신 동포들 중에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업이라든가 건설업에 취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족한 산업 분야의 인력 수급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배려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의 취업이 좀 용이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외국 동포들에 대한 취업을 제조업이라든가 이렇게 확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저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동포라고 치더라도 국적상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외국인 노동자인데 동포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의 지적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고용정책심의관이 대답하겠어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이채필** 예, 동포에 대해서 일반 외국인보다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포에 대한 우대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부분도 두루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을 감안해서 정하게 되고 또 최근에 법령을 개정해서 자진 출국한 외국 동포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 재입국하게끔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도 취업 허용 업종으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라든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적정선에서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지금은 건설업이라든가 서비스업종의 경기가 침체되고 그쪽에 취업할 수 있는 인력들이 남아돌기 때문에 제조업 쪽으로 부족한 부분을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건설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의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때는 일반 외국인을 또 그쪽에 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은 동포들을 입국시켜서 그쪽으로 배치하실 것입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이채필** 장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보면 앞으로 많은 인력들이 모자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수급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정한 것이 영구히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상황에 따라서 매년 종합적인 고려를 할 것입니다.

○**단병호 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국내 인력시장에 부족한 인력이 총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외국 인력의 입국을 얼마나 허용하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이나 업종을 같이 허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쪽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에 했던 부분들을 빼서 이리 옮겨 놓았다가 나중에 이쪽이 잘 되면 저쪽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이채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도가

작년 8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병행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해서 허가제로 일원화하려는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운영 상황을 조금 더 보아 가면서 평가를 통해서도 필요하다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와 관련되어서 하나만 여쭙 보겠습니다.

정두언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상당히 이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이 폐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제 법안이 제출되었으니까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소위에서보다도 큰 흐름에 관해서는 바로 이 대체토론 때 장관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왜 소위……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주 큰 부분은 이미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재**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장관님 의사를 답변하세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아니, 장관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답변을 못 하고 소위에서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닙니다. 오늘 정식으로 법안이 제안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아직 수립 안 됐으니까 검토한 후에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알았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정두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설치가 계속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는 노사 관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논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대화체제의 존재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갖는 의미와 기능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현재 노동계의 탈퇴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노사정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좀더 발전적이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는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간의 파트너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의 문제는 자율 해결이 원칙인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체제에서 다른 의제는 성격상 노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사회적 대화 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서구 유럽의 경험을 보아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오히려 노사정위원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현재 노동계 탈퇴로 인해서 공전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노동계를 독려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노사정위 해체를 논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아직 노사정위 해체에 대한 노동부의 결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글썬요, 아까의 답변에서 지금 특별히 더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것이,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더군다나 정두언 의원께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밀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의 폐지 문제는 물론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경재** 박희태 위원님!

○**박희태 위원** 그런데 노사정위원회가 오죽 기능을 못하고,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을 정도로 추락해 버렸기 때문에 이 폐지법안 낸 것 아닙니까?

전에도 장관께서 답변할 때에는 노사정위원회를 좌우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기다려봐야 아무런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진전이 있습니까?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금 그렇게 밝은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어두운 전망만 보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밝은 전망이 안 보입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노사정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폐지법률 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노사정위원회를 꼭 법률로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런 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의를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률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이 법률이 필요한 것인데 노사정위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합의를 봐도 강제력도 없고 거기에서 강제력이 있는 무슨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애초에 법률로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법률로서 정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로서 기능도 못하고 있고 또 강제력도 없고 또 구성한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동도 어렵고 하니까 이 기회에 폐지를 하고 발전적으로 다른 형태의 노사정협의체든지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우리 정두언 의원이 폐지법안을 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사를 법률로서 정하면 제일인 것처럼 하는 입법만능의 그런 사상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됩니다. 법으로 정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괜히 법률을 정하고 여야 간에 머리 맞대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요. 강제력 없는 그런 제도나 그런 기구를 자꾸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괜히 기능도 못하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장관 답변이 앞으로 언제 이 법에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가동해서 역할을 할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전망이 밝지도 않다고 그랬는데 이럴 바에야 이미 이 기구는 수명을 다 했다, 존재가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출발하는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장관?

○**노동부장관 김대환** 글썄요, 법을 폐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뭘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의원님 뭐 답변하실게……

○**정두언 의원**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께서 대화체제 시스템을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노사정위를 폐지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 노사정위 없을 때도 노사정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수시로 만나고 또 같이 불러서 만나고, 그런데 이게 생기고 난 다음부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하니까 그때 만나면 되지 그러고 안 만납니다. 그리고 수시로 얘기하던 친구들도 그때 얘기하면 되지 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화시스템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장관님이 답변 못하신 이유를 저는 압니다. 왜냐 하면 저도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노동부에 죽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하면 다들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사정위 문제를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면 별거숭이 임금님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임금님이 별거벗은 줄 알

면서도 입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똑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벗은 줄 알면서도 입었다고 한 것인데 다만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임금님 옷이 멋있다가 아니라 임금님 옷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 입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저기 이 지적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서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사정은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노동계 64명, 사용자 37명, 농업 31명, 기타 99명인데 정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가 잘되고 있는 네덜란드도 사용자 측에서 임명하는 11명, 노동자 측에서 임명하는 11명 그다음에 국왕이 임명하는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1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더 잘 아시리라고 보여지고요. 아일랜드도 지금 현재 이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 농업단체,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들어가 있는 데는 노사관계가 잘되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사정이 꼭 있어야 우리 사회의 갈등 또는 노사관계의 대화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 왔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노사관계로 끝날 일을 노정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이제 됐으니까 노사관계는 노사관계로 끝나고 왜 국민이 투표를 해서 합법적으로 뽑은 정부에다 대고 매일 투쟁이나 외치고 이러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 구조가 처음 그때 당시에는 노사정으로서 극복해야 될, IMF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노사정, 우리가 이렇게 하니 노사정, 노사정 했는데요.

지금 네덜란드 모델도, 제가 지금 서울 모델하느라고 많이 돌아보고 직접 지난번에도 갔다 왔는데요. 노사협의체입니다. 이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로 진전하게 나가려면 지난번 다행스럽게도, 지금 정치적 관계가 이러니까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요. 대통령 10월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사회협약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총리가 대독

한.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노사정 관계에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다, 이런 점에서 그 부분의 검토와 맞물려 가지고 저는 신중하게 이 부분, 폐지법률안 검토를 정부 측에서 시급하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6년도 내년에는 노사갈등이 없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 조사책자까지 나와서 자료 가지고 질의하시니까 학문적인 것 같습니다.

이목희 위원님!

○이목희 위원 노사정위원회 폐지와 관련해서요. 이것은 제가 별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디만 노동부에 물어보면 다 폐지에 찬성한다, 그것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왜 그러는지도 다 알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부 입장에서 노사정위원회 없는 게 편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종합적인 틀 속에서 검토를 해 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이렇게 놓고 검토하되 빨리빨리 폐지하자든지 그러실 것이 있는가 싶고요.

저는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성진 위원이 안 계신데 한국의 대학교수는 최고의 직업이다, 그런 대학교수가 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지금 연봉 1080만 원 받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월급 90만 원 받는 교수가 있습니다. 전임교수가 그렇습니다.

지방에 옛날 노태우 정권 때 마구 대학 설립을 인가해서 그때 이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지금 전임강사, 조교수인데 결혼할 때 되면 말을 못합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말 못하는 교수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월급을 왕창 올려 주자, 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렇게 늘어져 있는, 이것은 약간 다릅디다마는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대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은 자꾸 줄고 대학 운영은 안 되고 교수는 90만 원짜리가 나중에 50만 원, 60만 원짜리 교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교수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엄청난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하고요. 또 원칙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가능하면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낸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경악스러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무지와 편견에 가득 찬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논리를 누구한테 들어서 검토보고 이게…… 이런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면 됩니까?

우선 송복 연세대 교수가 뭐라고 그랬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뭐라고 그랬다, 현재 교수노조에 대한 참여율이 1.7%다, 공무원노조법 통과 당시 참여율이 65.1%이고 교원노조법 통과 당시 참여율이 40점몇 %입니까? 못 미친다, 이런 것을 근거자료로 하고 있는데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놈의 전문위원이 이렇게 무지와 편견으로 검토보고를 만듭니까?

이것 바로 볼까요?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학문연구 및 교수·강학상의 자유가 보장될 뿐 아니라 대학자치원칙에 따라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부여되고 있음” 이것은 대학 재단의 얘기입니다. 이것 노동부 얘기입니까? 자료 이것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국립 서울대학교에서요. 학문활동을 통해서 거기 뭇보였다고 잘라 가지고 복직도 안 되는 교수, 이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보세요.

“대학교수는 초·중등 교원근로자와는 다르며 사회의 지식주도층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교수사회의 요구나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 형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 공론화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회 공감대가 꼭 확 넓게 있어야 법을 만들고 뭘 허용합니까? 원칙적으로 권리는 많이 보장되어서 그게 좋으면, 그것이 심각한 사회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지 않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 보면 어디…… 이것 내가 옛날에도 공안당국에서 쓴 뉘를 연상케 하는 이런 검토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이것 누가 써 줬습니까?

또 보세요.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될 경우 다수의 교수협의회 조직이 노동조합으로 전환될 것

이 예상되며 이는 대학사회와 대학의 교직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게 옛날에 대공분실에서 만든 것하고 뭐가 달라요?

또 “교수노조가 결성되면 그 구성원의 특성상 근로조건이나 연구여건 개선 등 학내 문제보다는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의사형성 과정에 개입하려 할 개연성이 크며 이는 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될 수 있고 나아가”, 여기까지는 좋아요. “사회불안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어 보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것 보세요. 그러면 노동조합 왜 허용해 줘요? 노동조합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잖아요? 이것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도 있음”, “재단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음” 이렇게 아니라 이것을 그냥 아주 완전히 무슨 사회적 공론처럼 써 놔어요.

교수들이 무슨…… 제가 보면요. 그것 잘 모르는 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교수노조가 된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 근로조건이나 연구여건 개선, 이런 것에 아마 집중할 거예요. 옛날 민교협 같은 것이 있을 때 제기했던 그런 첨예한 정치적 어젠더가 지금 별로 없어요.

내가 부담되는 것은 90만 원 월급 받는 교수들이 임금 인상 열심히 요구해서 아마 재단 같은 데에서, 어려운 재단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서 만들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내가 평생 이 동네에 산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법안 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여당이에요. 무책임하게 법은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 보좌관이 써 준 제안설명서 고쳐 읽었잖아요. 사회적 공론화가 이제 필요하다, 공론화 한번 해 보자, 논의해 보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교수노조를 허용하면 우리 사회가 혼란과 분열에 빠져 가지고 망할 것처럼 써 놔잖아요.

전문위원, 이것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검토보고 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이것이 논쟁이 다른 데로 가 버린 것 같은데요, 아까 그것은 본인이 지적을 하

셨고, 그러니까 충분히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노동조합이, 아까 교수들의 처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꾸린다 이러면 노동조합을 꾸리는데 임금을 얼마 받는 사람만 꾸려라, 이렇게 나갈 것이라고 보여져요. 노동조합은 임금의 고향을 막론하고 또 그 지위가 어떤 것이냐를 막론하고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또는 헌법에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자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제약되어 있다면 그 제약들을 풀어 주는 것이 사회 발전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접근해야지, 현재 교수의 실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꾸려져야 한다고 한다면 마치 노동조합은 저임금 근로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소지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과연 교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주 속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이 점이 논쟁의 지점으로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희태 위원 전문가끼리 주고받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항 26항 27항 28항, 4개 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다 마쳤는데요, 한 가지 장관께 여쭙 보겠는데, 기능대학 통폐합과 관련해서 아까 배일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전에도 여러 가지, 국감기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훈련기관통폐합안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 개정이 되어야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통폐합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캠퍼스별 학생을 모집하고, 폐교 대상 학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또 대학 명칭도 바뀌서 학생을 모집하고, 이것은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국회 입법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무시하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노동부장관 김대환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아까 고용정책실장이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법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본부에서, 노동부에서 사후에 이것을 파악하고 전부 시정을 시켰습니다.

다만 저희 승인을 받아서 집행된 사항은 아니고 기능대학 이사회 쪽에서, 각 기능대학별로 일부 그러한 잘못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정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절차상의 이런 잘못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이 부분하고, 더군다나 일선 기능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하기도 하고 또 모집 중단도 하고 그럼으로써 실제 기능대학에 들어가려던 사람들이 얼마나 혼돈을 겪었겠어요? 대학입시를 앞두고 조금만 잘못해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무시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한 사과 가지고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내일 공청회가 열리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동부 소관 법률안 심사는 오늘 모두 마쳤기 때문에 노동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마치지 못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경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환경부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특별한 회의 일정 때문에 출

석하기 어렵다고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영주·김형주·노영민·단병호·우윤근·이목희·장복심·정청래·제종길·조정식 의원 발의)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먹는물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위원장 이경재** 의사일정 제29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정부에서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정부에서 제출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정부에서 제출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위원** 우원식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제29항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 내지 제32항까지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박선숙** 환경부 차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으로 제출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고 빈 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소매업자에게 빈 용기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설치한 집하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거나 판매업자가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판매업자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빈 용기 보증금 중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빈 용기 회수·재활용시설의 설치와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공익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단지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을 이용해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사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그동안 옥내 급수관 등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녹물 등이 발생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 아울러 정수시설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제도를 도입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 수도사업자가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의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 수질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을 때 급수설비의 세척이나 교체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급수설비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둘째, 정수시설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

해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자에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정수시설의 효율적인·운영 관리를 도모토록 했습니다.

셋째, 수돗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위해 일반 수도 사업자는 수돗물의 수질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내용을 관할 급수구역 안의 주민들에게 공지함과 동시에 수질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관할 급수구역 안의 주민에게 제공토록 했습니다.

넷째,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소유·관리자에게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이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규모 미만의 소형 저수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생상 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최종 급수 단계의 수질 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그동안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주류 등 기타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해양심층수를 먹는물에 추가했습니다.

둘째, 동일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먹는샘물과 청량음료나 주류 등 기타샘물 간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액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먹는샘물은 평균판매가격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였고, 그 밖의 샘물은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돗물 사용요금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정수기 제조업체의 잦은 도산 및 폐업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수기 제조업체에게 부품공급 및 고장수리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원식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등으로 생활폐기물 중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정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재활용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수거·처리 체계는 재사용보다는 소각·파쇄·매립 등 처리 중심의 수거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원 낭비와 2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동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함에 있어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처리 중심이 아니라 재사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재사용을 늘리기 위한 수거체계 개선에는 시설기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각 시·군·구별로 재활용센터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는 소규모 자치단체의 구역 범위 인구수 15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하종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입니다.

개정안은 재활용센터를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하되 인구가 15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경우 시·군·구별로 1개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재활용센터제도를 도입한 이상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15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규정은 지자체별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고려하고, 지자체별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재활용단지 조성의 지원근거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재활용단지의 조성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생활폐기물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처리되므로 재활용단지를 지방산업단지 형태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의 급수설비 위생조치 강화 문제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90년대 중반까지 급수관으로 내부에 녹이 발생하는 아연도강관이 주로 사용되어 수질 저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갱생설비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효과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서 차세대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스타(ECO-STAR) 프로젝트로 옥내급수관 신소재 및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에 대해 세척 등의 조치를 의무화할 경우 소유자, 관리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세척 등의 조치를 의무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출입·검사·수거 시 사전통지 신설 조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먹는물 관련 영업장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통지를 하되 긴급한 검사 및 수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규개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나 먹는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전에 통지를 할 경우 위법·부당 행위 등의 증거가 사전에 감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사전통지의무를 관계 공무원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않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위원님!

○장복심 위원 우원식 의원님 안이요, 대형폐기물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찬성하는데요.

인구 15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여

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재활용 발생량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대해서요, 수도법……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옥내 급수관의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어떠한지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옥내 급수관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 시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이나 서울 강북지역 등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수요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시설 개선, 지원의 편차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하고요.

개정안에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행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부차관 박선숙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의 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복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문제와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의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어서 지적해 주신 수도법 관련된…… 수도법에서 옥내 급수관의 세척·갱생·교체 비용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수도 사업자별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과천과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를 통해서 급수관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옥내 급수관 진단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해서 에코스타 프로젝트로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등의 급수설비 위생 조치 강화와 관련해서 좀 유예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준비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조금 더 의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정부안의 먹는물관리법이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질과 개발 이용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할 경우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것인가 하고요. 먹는해양심층수의 이용부담금, 그리고 광고 제한 등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실 예정인지?

○환경부차관 박선숙 상하수도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유영창 상하수도국장 유영창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먹는해양심층수 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업무 분담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용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주관을 하고 수질 관리, 기준의 설정 이런 것은 환경부가 한다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법이 성안이 되었습니다. 아직 국회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분들은 먹는해양심층수도 일종의 먹는물이니까 환경부에서 다 관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백m에서 벌어지는 일을 환경부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 가지고 수질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하고 해양심층수법이 되더라도 수질기준에 대한 것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된 바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거기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명확하게 구분이 다 됩니까?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유영창 예, 그리고 그것을 총리실이 주관해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경우에 먹는물관리법에 수질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아까 지적하신 TV 광고 제한, 이것들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차관님께서 감기 몸살이 심하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도물을 이용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요? 그것이 수도물에 대한 불신인데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서라는 이유로 수도물을 안 먹고 있습니다.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수도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1인 1일 급수량에 대한 기본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데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도사업 위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은 이 법안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서면질의로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환경부차관 박선숙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에 수도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취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의 물 셀 틈이 없는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공개를 하고 옥내급수관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법에 반영하여 오늘 제안드린 만큼 법 개정 이후에 법을 집행하는 노력을 통해서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말씀해 주신 1인 1일 급수량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전국 수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1인 1일 급수량에 대한 최종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내용에 관해서는 추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원식 의원님 개정안에 대형폐기물을 분리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조의2에서의

재활용센터의 개념과 정부 개정안 제34조의4에서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역할이 중첩되어서 혼동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 박선숙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해서는 소위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정부가 제출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제4항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필요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이 되겠지요?

○환경부차관 박선숙 예.

○제종길 위원 전국에 몇 곳이나 되나요?

○환경부차관 박선숙 2004년 말 현재로 552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면 대개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몇 분이나 될 것으로 봅니까?

○환경부차관 박선숙 현재 2004년 말 기준으로 할 때 정수장 운영인력이 6276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런 운영인력들이 앞으로 자격시험을 통해서 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서 수도물의 품질관리를 좀더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충분히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그 사이에 생기는 혼란은 어떻게 방지할 생각이십니까?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유명창 상하수도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토목기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민간에서 쓰이는 것인데요. 우리 정수장에는 어떤 기사 이런 것 하나만 따서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고 기계, 전기계장, 화공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정수장시설 같은 것을 할 때는 실습교육이 중요한데 아직 우리나라 재정여건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교육센터를 만들 것인데 저

회가 볼 때에 이 정수장이라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그 자체이다,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격제도를 하는데 이런 제도는 미국, 일본도 가지고 있고 거기 정수장마다 가면 사진까지 해서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하루 5000t 이상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3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2009년부터는 2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배치토록 그렇게 하위법령에서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종길 위원 그것도 필요하고요, 하위법령에서 지금 어떤 게 규정되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 사람이 거기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박선숙 예.

○제종길 위원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수장에 있거나 또 그 사람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아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현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실제로 지금 관리를 하는 사람이 시험을 치룬 이후에 어떤 정수장은 전원 교체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깐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제17조의5에 보면, 이것은 사소한 것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아래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된다고 해서 1, 2, 3으로 해 놓았는데 제 생각에는 3번을 맨 먼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수시설…… 그다음 1번, 2번은 부차적이고,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므로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유영창 소위심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바뀌는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 박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다음에 먹는물관리법안인데요. 보니까 한글로 다 바꾸시는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 박선숙 요즘 법안을 전체적으로……

○제종길 위원 법안을 다 바꾸는데 먹는물관리법 할 때 관리법도 한글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아무리 명사형으로 써 있지만 “먹는샘물”은 띄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질의의 주체는 아니지만 “먹는해양심층수” 해서 ‘먹는’까지 붙여 써야 되나 이것이지요.

○환경부차관 박선숙 이것이 하나의 고유명사화를 해 놓는 과정이라서 이른바 생수를 ‘먹는물’로 명사로 만든……

○제종길 위원 명사로 해도 국문법에는 맞아야지요. 그것을 붙여 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먹는해양심층수”인데요, 이것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먹는해양심층수 하면 우리가 심층수만 먹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심층수 자체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먹는샘물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그 자체로 바로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가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온도에 있는 표층수 물도 먹는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먹는해양심층수로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건강에 좋고 웰빙 물이라고 해서 먹는 것인데 실제로는 필요에 의해서 사실 동해의 표층수도 먹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한 것 아닌가, 실제로 물의 조성도 다르고 그 과정도 다른데 실제로 먹는물로 규정해서 산업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용도에 쓰였을 때는 상당히 너무 제약적인 요소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먹는 바닷물’이라고 하든지, 지금 먹는 바닷물 중에서 해양심층수만 개발이 되니까…… 해양심층수는 그대로 개발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표층수도 먹어야 되면 그때는 또 ‘먹는해양표층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부차관 박선숙 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양심층수를 먹는물에 새롭게 처음으로 허가를 해 드리는 마당인 것만큼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하여튼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목희 위원님.

○이목희 위원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실제로 지자체가 하는 재활용센터도 있지만 민간이 하는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박선숙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데 우원식 의원의 개정안처럼 되는 경우에 민간 재활용업자들이 혹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윤종수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지금 우 의원님 발의안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재활용센터 이외에 또 민간에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데 내 말은 어쨌든 지자체가 이것을 더 열심히 하자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윤종수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이런 경우에 민간 재활용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나 이 말이에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윤종수 현재도 많이 있는데요,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면 민간 재활용업자들의 대표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옳지 않나요? 그 사람들도 참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윤종수 예, 그래서 우 의원님 발의 안에 따르면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목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간 재활용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해 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윤종수 이해관계가 미처가지고 그분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문제 같으면 의견 수렴이 가능한데 이것은 지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만 문구 조정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임의조항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수도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21조(위생상의 조치)와 관련된 내용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

자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저수조의 수질검사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수조의 수질에 이상이 있을 때 사실은 저수조로 들어오는 유입수를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박선숙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유입수에 문제가 생겨서 저수조의 수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저수조의 위생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수조의 수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수조 상태 점검부터……

○이목희 위원 하고 난 다음에……

○환경부차관 박선숙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유입수 차단 조치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데 저수조 수질 검사 결과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물 공급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차관 박선숙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럴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박선숙 저희가 일반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물 공급 방안들을, 물탱크로 물을 공급한다거나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박선숙 예.

○이목희 위원 이 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마련되어 있는 대책으로 현재 환경부는 괜찮다,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환경부차관 박선숙 특히 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한 대책들은 저희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준비를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박선숙 예, 그러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먹는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생수와 미네랄워터가 한국에서는 구분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박선숙 먹는물의 경우에는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네

랄위터가 특별히 성분을 조정해서 미네랄 비중을 추가로 높여 놓은 그런 물을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일반 먹는물의 범주에는 포함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생수는 500mg 이상의 잔유물이 남아서는 안 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계 미네랄위터는 FDA에서 250g 이상이라야 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지금 답변하시지는 마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박선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심재엽·최연희·홍문표·김학송·김재원·허천·박재완·김재경·김재원·임인배·류근찬·서병수·김명주·엄호성·정병국·고조홍·김춘진·정문헌·이해봉·박세환·박상돈·최경환·이인기·이계진·허태열·이명규·전여옥·박찬숙 의원 발의)(계속)

34.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김재원·박재완·권경석·곽성문·안상수·김성조·정갑윤·이상득·김무성·임인배·배일도·이해봉·고조홍·엄호성·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3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신학용·김동철·김우남·오영식·김재윤·한광원·이영호·윤원호·백원우·김현미·제종길 의원 발의)(계속)

36. 環境紛爭調停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신학용·문병호·제종길·김재윤·한광원·이영호·김우남·오영식·윤원호·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3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

언·김재경·이계경·임태희·이해봉·박세환·신상진·김재원·엄호성·안상수·정성호·최규식·박재완·고조홍·안민석·이은영·나경원·이경재·박승환 의원 발의)(계속)

(18시34분)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심재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37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두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두언 의원 정두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를 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천연골재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난해 천연골재 파동, 즉 골재대란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2004년 11월에는 섬진강에서의 골재채취가 영구 금지되고 또 배타적경제수역, 영산강, 웅진군 골재채취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는 지연되었고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 민원은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으며 북한과 중국 등지로부터 골재를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재 공급원 개발을 위한 국토 훼손 및 자연환경 파괴는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존되어 있는 천연골재 약 100억㎥ 중 개발 가능량은 약 50억㎥ 정도이며 연간 건설산업 등에서 약 2억 5000만㎥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20년 이내에는 천연골재가 완전히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난해에는 연간 5300여 만t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했고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003년 12월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 건설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올해 1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는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용도로의 재활용은 전체 순환골재 생산량 대비 약 14%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마구잡이로 파쇄하고 성토·복토용 등으로 단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철거업자와 장비임대업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처리기준의 원칙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인식하고 다음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으며 그 결과로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이외에 배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폐기물의 발주방식 중 발주기관이 계약체결의 간편성 등의 사유로 인해 분리발주보다는 분담이행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동 제도는 컨소시엄 구성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서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고 있고 건설공사 지연까지 초래하고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하는 건설공사는 분담이행방식을 삭제하고 분리발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

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무자격자인 철거공사업자나 장비임대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처리비용까지 받는 수주행위 및 재하도급 등의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였고 또 다른 해당 부처인 건교부도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해서 건설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나아가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내용은 다시 반복하실 필요가 없고 검토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하종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현재 도립공원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있으나 폐지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소정의 절차 이외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지 등의 경우에도 시·도지사도 하여금 지정할 때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에게로의 권한 이양을 통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자연생태계 등 자연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에게는 각종 규제가 수반되고 있으므로 공원구역 내의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 등의 공

원구역 축소 내지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폐지 등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전국적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공원 지정·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도립공원의 폐지 등을 시·도지사에게만 맡길 경우 여러 가지 역기능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바 구체적인 심의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택지개발 사업 등의 규모를 당초 10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택지분양가에 포함되어 사실상 입주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고 개발사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처리시설 등을 강제함에 따른 입지선정 문제, 비용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규모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부담 경감과 개발사업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부과에 대한 향후의 연구 등에 기초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선미 의원 대표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 제22조제2항은 규제의 요건으로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규제의 내용도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작용은 법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입법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의 경우 그 내용이 규제발동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규제의 내용과 범위 등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법조문 전체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팔당·대청호 지역이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보전을 위한 여러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일부 고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경우 규제로 인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도권의 규제완화 요구가 팽배한 시점에서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기보다는 특별대책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체계 구축 차원에서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거친 후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선미 의원 대표발의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시행령의 동 규정이 환경분쟁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까지 알선·조정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권리·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법률사항이므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 제2조에 따르면 예견되는 환경분쟁도 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분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 제9조와 새로운 절차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두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건설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근거와 건설공사 발주 시 분담이행방식의 폐지 문제, 배출자에 의한 재활용은 현장 내로 한정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같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62조제1호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를 직접 위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2호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

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62조제1호에서 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경우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않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심재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분산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도립공원의 구역 조정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지역개발 공약과 주민 민원으로 도립공원의 난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차관님, 지역개발을 위해 도립공원의 구역 조정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지요?

○**환경부차관 박선숙** 지난해에 묘지조성 용도로 공원구역 해제 요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법안 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법안이 개정된다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규모 조정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경우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 박선숙**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 수요를 일정하게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을 일정하게 제한함으로써 공공재로서의 공원을 보전해야 되는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한번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조정하는 사안은 자연공원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중앙행정기

관의 종합적인 판단과 환경부장관의 승인 아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 개정안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차관 박선숙** 같은 의견입니다.

○**김영주 위원** 이명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 시 입주자에게 더 큰 비용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차관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차관 박선숙**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동주택이 개발되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의무가 생기는 동시에 또 주민세 세입이 늘어나서 세입은 많이 증대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사업비의 30% 이상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지자체 부담이 증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차관 박선숙** 예, 같은 의견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현행 법규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부담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박선숙** 저희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박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두언 의원님께서 모처럼 제출하신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우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서 원안대로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이 하신 얘기와 동일한데요. 특히 앞으로 이런 요구가 계속

연이어질 것이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집요하게 요구할 텐데 환경부에서 단호하게, 지정 때는 도지사가 알아서 하더라도 폐지 때는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동의 또는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간 것이기는 한데 수질개선분담금, 지금 연구용역 중이지 않나요?

○**환경부차관 박선숙**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여기 보면 분담금 내용을 일부 바꾸었는데 내년 3월에 나오는데 굳이 이번에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환경부차관 박선숙** 이번 법 개정에 반영한 내용은 작년 국감에서의 지적을 포함하여 지난해부터 검토된 그간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법에 담는 과정에서 좀더 근본적으로 물 이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용역에 착수하게 된 것이어서 저희가 순차적인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종길 위원**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다시 또 법안 개정……

○**환경부차관 박선숙**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180 대 1에 가까운 편차를 보였던 요금 체계를 일거에 1 대 1로 개편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무리한 점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목희 위원님!

○**이목희 위원** 제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보면 하는 소리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못 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문화재이고 하나는 환경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방분권, 이것 맞는 말인데 그냥 마구 분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턱도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하게 말리는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복지를 분권화해서 생기는 폐해가 많습니다. 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으라고 돈을 주면 안 짓습니다. 그리고 불용해서 다시 올려 보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복지 환경 노동 이런 데에서 많이 생기는데,

존경하는 심재엽 의원 발의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심도 있는 검토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동의하시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속기록에 안 남기기 위해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가 아니고, 택지개발업자들이 폐기물을 자신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나요? 꼭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나요? 얘기해 보세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윤종수**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대규모단지의 경우에 하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100만㎡이던 것이 작년 8월 11일에 30만㎡로 바뀌었거든요. 그 미만은 대략 우리 주택법이나 이런 데 보면 1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규모인 경우에 한 가구당 대략 5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고 조그만 경우에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공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조그만 규모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좀 큰 규모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데 그 적정선이 30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윤종수** 예, 영향평가 대상인데 30만 정도는 되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의견은 이 법안은 안 하는 것이 좋겠냐?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윤종수**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목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장복심 위원님!

○**장복심 위원** 정두언 의원님, 법 시행 과정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발주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분리발주 이외에 분담이행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담이행방식을 폐지할 경우 발주자의 선택 폭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일괄수주계약이 꽤 많은 실정인데 이 경우 건설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분담이행방식을 폐지할 경우에 일괄수주계약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 모두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건설업체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 등 관련 업계 의견을 혹시 들으셨는지요? 환경부하고 건교부 검토의견만 들으셨는데 혹시 관련 업계 의견을 들으신 것이 있는지요?

○정두언 의원 애당초 관련 업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먼저 제기를 해 가지고 법안이 된 것이고 그리고 양 부처에서 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당초 법안 자체가 처음에 초안을 만들 때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을 입안 과정에서 왜곡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된 것이 아니라 더 잘해 보겠다고 한 것인데 현실이 잘 반영 안 된 것이지요.

지금 장복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럴 줄 알고 입안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오히려 현실에 더 안 맞는다 해서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언제의 원위치로 가는 것입니까?

○정두언 의원 법안 초안으로요.

○장복심 위원 초안이 언제 것이지요?

○정두언 의원 2003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장복심 위원 그때부터 국회의원 하셨어요?

○정두언 의원 아니, 그 내력을 살펴보니깐 그렇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장복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34항~제37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합하는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서 입법조사관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법률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제종길 위원님, 이목희 위원님, 장복심 위원님, 정두언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자리를 뜨신 김영주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공 성 진	김 영 주	김 형 주	단 병 호
박 회 태	배 일 도	신 상 진	우 원 식
이 경 재	이 목 희	장 복 심	정 두 언
제 종 길	조 정 식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하	종	범
전 문 위 원	이	동	근

○정부측 참석자

환 경 부				
차 관	박	선	숙	
정책홍보관리실장	이	규	용	
자연보전국장	김	상	일	
상하수도국장	유	영	창	
자원순환국장	윤	종	수	
재정기획관	박	희	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정	도	영	
노 동 부				
장 관	김	대	환	
차 관	정	병	석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김	성	중	
고용정책본부장	노	민	기	
노사정책국장	엄	현	택	
근로기준국장	박	종	철	
산업안전보건국장	송	영	중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심의관	이	채	필	

노동보험심의관	장	옥	주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이	상	진
정책홍보관리본부			
재정기획관	조	재	정